

2014-05

기본연구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고승한 · 이소정

Pendi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4-05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고승한 · 이소정



#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의 확산에 직면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고령사회가 당면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예상하면서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겪은 고령화 현상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고, 동시에 고령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격히 발생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당면할 경제적 생활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노후소득보장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평생 직장을 다닌 후 직장생활에서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일은 노후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필요조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3년 12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1%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동시에 8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10만명당 100세인 인구비율도 전국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여 장수사회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령사회에서 제주노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노후생활의 경제적 소득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혹은 노인들 스스로 경제적 생

활 유지를 해 나가느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당면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주사회에서 노인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전략들을 마련하는 일은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주노인들이 고령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제2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바로 제주사회가 추구하는 ‘장수사회’와 ‘세계평화의 섬’을 구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바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014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공 영 민

## 연구요약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 제주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지 못하면 국가·사회적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임.
- 따라서 제주노인들이 은퇴 후에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전략과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여 제주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설문조사
- 전문가 포럼에 의한 전문가 의견 수렴

### 3. 연구내용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제도 현황 분석
-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지역의 노후생활실태에 대한 실증조사 및 분석
- 제주노인의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 구상과 정책적 대응과제 제시

### 4. 연구의 기대효과

- 고령사회의 변화와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제주도내 노인들이 노후생활실태 인식과 지원정책 기초자료 제공
- 제주지역의 노인세대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
- 제주지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초자료 생성

#### 5.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

- 고령사회에서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노동력 부족, 평균근로연령 상승, 생산적 자본축적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력의 지속적 약화가 예상됨. 반면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양, 보건·의료, 연금, 복지 등 분야에서 노인복지지출 재정문제와 각종 노인문제(빈곤, 방임, 학대, 자살 등)의 발생

#### 6.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제도 현황

- 고령자 고용보장 정책
  - 생애경력 직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용연장지원 제도의 실시(예,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 고령자의 신규고용을 촉진시키는 고령자 대상 취업연계 및 지원시스템 구축(예, 고용센터의 기능 활성화,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고령자인재은행의 활성화 등)
  - 고령자의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시행
  -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사회적경제 분야(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 고령자 소득보장 정책
  -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 7.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과 문제점

### ○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3.1%로 나타나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음.
-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층 비율도 9.2%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함.

### ○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 연금 및 보험지원 관련 분야(예,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5천원 장수수당 지급
- 노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노인일자리 사업(시니어클럽, 고령자인재은행,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서 추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 ○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관련 노인복지정책

- 노인돌봄서비스 정책(독거노인 지원, 노인돌보미 사업 등), 보건의료지원 정책(치매예방 및 치료 등), 저소득층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정책(주거비, 목욕료, 이·미용료, 틀니, 보청기, 간병비 등)

### ○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

- 제주노인복지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
-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화된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기획·집행에 한계
-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자 선정기준과 적용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층 지원에 한계
-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한계
-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다른 정책(주거복지, 보건의료복지, 여가복지, 교육복지, 가족복지 등)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어려움
-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부서들과의 연계 협력



수행에 한계

-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른 정책사업(사회적기업 지원 등)과의 지원 중복성으로 비효율적 정책 추진 발생
-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 증액의 불가피성으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공공분야에 치중되어 노인의 경제적 생활보장에 미흡함.

## 8.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실태조사와 분석

### 1)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대상 표집방법은 군락표집(cluster sample), 무작위표집(random sample), 그리고 할당표집 방법 활용
- 최종 조사 분석대상자는 296명이고, 빈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음.

### 2) 빈도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인구학적 특성
  -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친화적 직종개발 필요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설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노인들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실시
-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
  -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 노인친화적 교통시스템 구축
  - 노후생활의 경제적 보장과 일자리 제공(재취업)이 중요
- 경제생활 상태에 대한 인식 결과

-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 퇴직 전 혹은 퇴직 후에 노후준비 설계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퇴직 후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재취업(혹은 계속고용) 및 고용정책 활성화 중요
  - 부동산을 소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용 필요
- 경제활동 참여
-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주로 생계비와 용돈 마련을 위한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의향이 큼.
  - 노인들이 농·수·축산업에 오래 종사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아 퇴직 후 다른 직업을 구할 경우에 전문적 컨설팅을 받고 재취업 교육훈련이 필요함.
  - 노인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건강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건강개선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함.
- 취업활동
- 노인들의 취업열망이 크므로 체계적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됨.
  - 노인인력을 채용할 의향이 있는 사업체(혹은 조직, 기관)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일, 과거에 경험한 일, 희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향이 크므로 노인 일자리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노인들이 관광 혹은 농사일, 공공근로직 등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운영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 노인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는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 강화에 더욱 나서야 할 것임.

-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인 우선고용에 적합한 직종개발, 노인취업 및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 확충, 노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 노인고용의무 강화 등에 정책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

## 9.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 1) 기본방향

-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와 질적 개선
- 중앙정부 노인소득보장 및 노인고용정책의 내실화
- 노후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
- 노인의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의 통합적 접근
- 노인주거, 노인보건의료, 노인여가정책 등과의 정책 연계 강화
- 가족돌봄과 지역사회 연계된 노후생활 지원 확충
-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2) 기본전략

- 노후생활 안정화 기반구축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 노인층 유형별로 경제적 생활 안정화 전략 모색
-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노인들의 자립역량 강화
-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전략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과의 통합적 연계 전략

구축

- 도민과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
-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 대한 긴급지원체계 구축 전략
-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전략

**3) 기본내용**

- 노후생활 안정화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택적 법적·제도적 지원
- 노인들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 노인고용 및 사회참여 역량 강화 및 지원체제 구축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적 협력체제 구축

**4) 향후 정책과제**

**가) 중앙정부 차원의 노후생활 안정화 대응과제**

- ①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획기적 변화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
  
- ② 퇴직 전 직장 내 진로전환 인프라 강화
- 국가 단위의 노인 진로전환지원 인프라 강화
- 노후생활 안정화에 자영업의 지속성 및 창업지원 강화
- 기업에서 근로자 다기능생활(Multi-life) 지원
- 퇴직 예정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가칭) 학습휴가제 도입
- (가칭)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퇴직 후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③ 정년연장법의 실효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
  - 정년연장 유예기간에서 점진적인 퇴직제도로 확대
  - 정년연장 지원을 위한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도입
- ④ 복지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노인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의 현실성 반영
    - 자가소유의 주택 혹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빈곤생활을 하는 노인층에 대한 지원 검토
- 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실화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활성화 위한 통합적 운영 및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의 총괄적 운영을 위해 (가칭)노인고용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노인특성(성별, 학력,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직종개발
- ⑥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의 재설계 및 지원체계 구축
  - 퇴직 전과 퇴직 후 재취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노후생활 안정화 대응과제**

- ①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추진 부처와 협력 증진
- 중앙 부처 노인복지 및 노인고용 담당 부서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②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검토 및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검토 및 개선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주노인의 탈빈곤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 ③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확충
- ④ 제주지역에 진로전환지원 체계의 구축
  - (가칭) 「제주진로전환지원센터」 설립·운영
  - (가칭) 「제주노인고용지원센터」 설립·운영
- ⑤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노후생활지원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충
  -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 ⑥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정책 관련 부서와 기관(단체)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일자리 창출 담당 부서 간의 협력
  - 민간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 ⑦ 노인고용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과 타 정책의 통합적 연대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후소득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
- ⑧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노인에 대한 긴급보호지원체제 구축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노인 DB 구축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 노인층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실시
- ⑨ 제주지역 노후소득보장정책 관련 R&D 사업 활성화
- 제주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연금 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고용 정책 관련 R&D 사업 지원
- ⑩ 노인친화적 직종 개발 및 보급 사업
- 제주노인에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부문에 노인친화적 직종 개발 및 취업연계 사업
-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취업 활성화
- ⑪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다)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시스템 구축**

- ①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네트워크 구성
- 지역사회(이웃, 동네, 마을, 동, 읍 면지역) 내에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자원조사
- ②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 네트워크 시행
-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네트워크의 활동 전개

**라) 노인 개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 ① 퇴직 전과 후의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
- ②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 ③ 노인 재취업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목 차

<b>제1장 연구의 개요</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4
3. 연구의 주요내용 .....	5
4. 연구의 기대효과 .....	5
5. 연구의 한계점 .....	6
<b>제2장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b> .....	<b>7</b>
1. 고령화 추이 .....	7
2. 고령화로 인한 주요 변화와 파급효과 .....	11
<b>제3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제도 현황 분석</b> .....	<b>17</b>
1. 고령자 고용보장 정책 .....	17
2. 고령자 소득보장 정책 .....	41
3.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외국 선진사례 .....	54
4.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61
<b>제4장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과 문제점</b> .....	<b>74</b>
1.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	74
2.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실태 .....	78
3.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 .....	95
<b>제5장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실태조사와 분석</b> .....	<b>98</b>
1. 조사의 설계 .....	98
2. 노후생활 실태조사 분석 및 해석 .....	98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 요약 및 시사점 .....	156



제6장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	165
1. 기본방향 .....	166
2. 기본전략 .....	167
3. 기본내용 .....	170
4. 향후 정책 대응과제 .....	171
□ 참고문헌 .....	196
□ 부    록    □ .....	199
□ ABSTRACT .....	213

# 표 목 차

<표 2-1> 연령대별 인구수 및 비중 추이 .....	7
<표 2-2> 생산가능인구 추이 .....	9
<표 2-3> 부양비 추이 .....	10
<표 3-1> 연도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현황 .....	21
<표 3-2>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	23
<표 3-3>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 실적 현황 .....	24
<표 3-4> 중견전문인력 연도별 취업 등 실적현황 .....	29
<표 3-5> 고령자인재은행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현황 .....	30
<표 3-6>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적 .....	37
<표 3-7>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39
<표 3-8> 협동조합 현황 .....	41
<표 3-9> 연금 급여의 종류 .....	44
<표 3-10> 연도별 소득대체율 변화와 연금급여 상수 .....	45
<표 3-11> 노령연금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기준 .....	46
<표 3-12>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	47
<표 3-13>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48
<표 3-14> 노인 빈곤율 .....	51
<표 3-15> 고령자 고용현황 .....	69
<표 3-16>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현원, 부족인원 및 부족률 .....	71
<표 4-1>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 .....	74
<표 4-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추진 노인복지정책사업 현황 .....	84
<표 4-3>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노인 현황 .....	87
<표 4-4> 제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지원 현황 .....	88
<표 4-5>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 .....	89
<표 4-6>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	90
<표 4-7> 제주지역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	92

<표 4-8> 전국 및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	93
<표 4-9> 전국 및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고용율 변화 .....	94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101
<표 5-2> 현재 생활 만족도 .....	107
<표 5-3> 현재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 .....	107
<표 5-4> 현재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	109
<표 5-5> 현재 생활 중 가장 필요한 점 .....	110
<표 5-6> 현재 생활수준 정도 인식 .....	111
<표 5-7> 현재 생활비 부담자 .....	112
<표 5-8> 현재 용돈 부담자 .....	113
<표 5-9> 등록 장애인 여부 .....	113
<표 5-10> 조사대상 노인의 2013년도 연간 소득 분포 .....	115
<표 5-11>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2013년도 연간 소득 분포 .....	123
<표 5-12> 현재 조사대상 노인의 자산 및 부채 상황 .....	129
<표 5-13> 현재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자산 및 부채 상황 .....	131
<표 5-14 > 조사대상 노인 혹은 배우자의 부채 주요 이유 .....	132
<표 5-15> 현재 수입 창출 경제활동 참여 여부 .....	133
<표 5-16> 현재 종사하는 직업유형 .....	134
<표 5-17> 현재 평균 근로시간 .....	135
<표 5-18> 현재 고용상 종사자 지위 .....	135
<표 5-19> 현재 일하는 이유 .....	136
<표 5-20>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	137
<표 5-21> 현재 일에 참여 지속성 여부 .....	137
<표 5-22> 과거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유형 .....	138
<표 5-23>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고용상 종사자 지위 .....	139
<표 5-24> 직업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 .....	140
<표 5-25>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141
<표 5-26> 향후 취업 여부 .....	142
<표 5-27>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142

<표 5-28> 희망 직종 유형 .....	143
<표 5-29> 희망하는 근로시간 .....	144
<표 5-30> 희망하는 월 평균소득 .....	145
<표 5-31> 취업 시 가장 우선사항 .....	146
<표 5-32> 취업을 위한 지난 1년간 노력 여부 .....	148
<표 5-33> 취업하고 싶은 구체적 일자리 유형 .....	149
<표 5-34> 향후 일할 계획 기간 분포 .....	151
<표 5-35> 취업 희망 정도 .....	152
<표 5-36> 취업 시 문제점 .....	153
<표 5-37>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인지도 .....	153
<표 5-38>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 .....	155

## 그림 목 차

<그림 2-1> 60세 이상 인구 비율 추계 .....	8
<그림 2-2> 노인 가구 구성비 변화추이 .....	10
<그림 2-3> 노인 자살률의 국제 비교 .....	15
<그림 2-4> 65세 이상 노인 삶의 질 국제비교 .....	16
<그림 3-1> 취업알선 흐름도 .....	25
<그림 3-2>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목표 및 실적 추이 .....	36
<그림 3-3> 사회적기업의 역할 .....	38
<그림 3-4> 기본연금액 산정 공식 .....	45
<그림 3-5> 섹터별 고용유발효과 .....	73
<그림 4-1> 연도별 제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인구 변화 .....	76
<그림 4-2> 제주지역 100세 장수노인 인구변화 .....	77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과제로 부각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 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그래서 일부 선진국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이 고령사회의 대응 정책들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 있음.
-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분야에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영역이 주로 소득보장, 고용, 주거, 보건의료, 여가 등에 집중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들이 2010년부터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10년 안에 퇴직하면 노인층으로 편입되면서 우리사회의 노인층의 소득, 고용, 복지, 교육, 건강, 의료, 여가문제 등이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정책의 대응과제로 부각 될 것임(고승한 외. 2013).
- 고령사회에 노인들이 당면하게 되고, 동시에 해결할 다양한 문제 (소득, 고용, 건강, 주거, 교육, 여가 등)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함.

- 노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노후준비(특히 소득, 연금, 개인재산)를 잘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는 노후생활의 불안정과 빈곤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 결과 노인의 빈곤문제 혹은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 혹은 국가·사회가 떠안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보건복지부(2013)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중하위 소득 50% 미만)이 47.2%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빈곤율(12.9%)과 우리나라 평균 빈곤율(14.9%)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총 1,394,0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376,098명으로 전체 노인의 6.3%를 차지하여 2.3배 정도 높은 수준임(보건복지부, 2013).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27%이고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65.8%임. 그래서 노인들이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인이 1/3도 미치지 못하니 상대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당연히 높음.
- 우리나라에서 현 단계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로써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제공되는 수급액이 낮아 노인들의 탈빈곤하기에 어려운 실정임(김경혜·윤민석, 2013).
- 노인들의 노후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문제이

고 동시에 노후에 경제적 활동 참여를 위해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고승한, 2006; 고승한 외. 2008; 고승한 외. 2010). 이는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 노후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유형에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다른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있음. 반면에 개별 노인들이 민간연금(각종 연금보험), 재산소득(집, 토지, 건물), 사적 이전소득(자녀의 생활비 및 용돈 지원) 등에 의존하여 노후에 경제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경향이 있음(윤석명 외. 2011; 장세철 외. 2006).
- 제주지역은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여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의 안정화 대책(특히 소득보장)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다만 중앙정부의 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의존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경향이 큼.
-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대응계획,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조례,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의 정책 방안 혹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제주지역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부양이나 생활을 위한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거나 혹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들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이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대응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고령사회에서 제주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의 안정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영위해 나가는데 중요한 전략과 대응과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함.

## 2.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적 생활안정 전략과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둘째, 제주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 셋째, 제주노인들의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전략 구상과 정책적 대응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설문조사
- 전문가의 의견 수렴

### 3. 연구의 주요내용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제도 현황 분석
-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지역의 노후생활실태에 대한 실증조사 및 분석
- 제주노인의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 구상과 정책적 대응과제 제시

### 4. 연구의 기대효과

- 고령사회의 변화와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제주도내 노인들이 노후생활실태 인식과 지원정책 기초자료 제공
- 제주지역의 노인세대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

- 제주지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초자료 생성

## 5.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집된 사례 분석을 가지고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이 있음.
-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설문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참여관찰에 의한 노인들의 일상적 경제생활 과정과 결과(특히 가족 내 경제생활 유지 과정과 문제점, 생산활동 유형과 과정, 소비생활, 노동형태와 참여과정, 경제생활의 위기 극복 과정과 대안 등)를 깊이 있게 관찰·분석하지 못하였음.
-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면접표를 가지고 수행된 설문조사가 단일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과정과 차별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종단적 비교·분석을 하지 못하였음.
- 본 연구는 제주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유지 및 향상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안정화 전략에 영향을 주는 사회참여, 여가, 주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는 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앞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화에 대한 전략과 대응과제들이 실제로 제주노인의 삶의 질적 변화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종단적 패널연구가 필요함.

## 제2장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

## 1. 고령화 추이

-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며, 2020년에는 15.7%, 2040년에는 32.3%, 2060년에는 40.1%로 지속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0%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lt;표 2-1&gt; 연령대별 인구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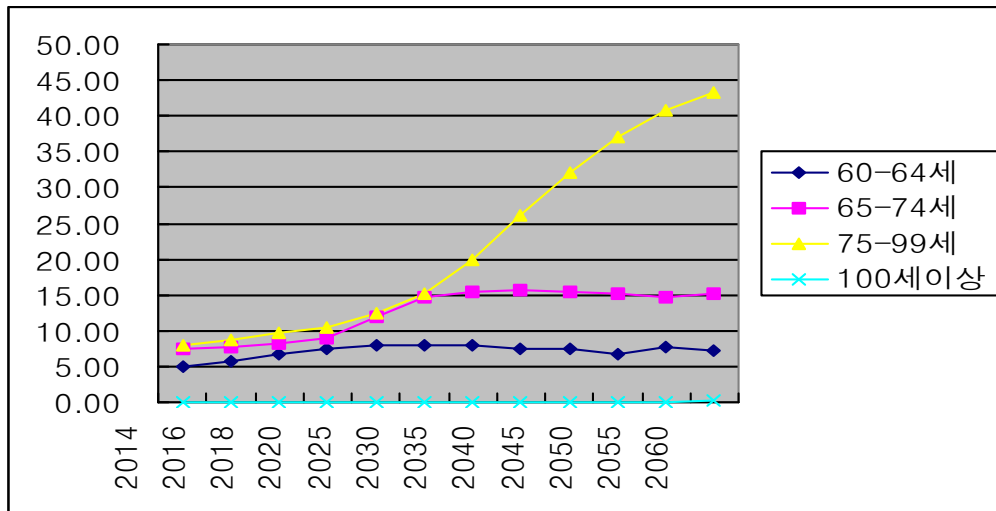
연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960	25,012,374	10,587,583	42.3	13,698,341	54.8	726,450	2.9
1970	32,240,827	13,709,367	42.5	17,540,152	54.4	991,308	3.1
1980	38,123,775	12,950,775	34.0	23,716,967	62.2	1,456,033	3.8
1990	42,869,283	10,973,592	25.6	29,700,607	69.3	2,195,084	5.1
2000	47,008,111	9,911,229	21.1	33,701,986	71.7	3,394,896	7.2
2010	49,410,366	7,975,374	16.1	35,982,502	72.8	5,452,490	11.0
2013	50,219,669	7,370,118	14.7	36,711,849	73.1	6,137,702	12.2
2020	51,435,495	6,788,432	13.2	36,562,967	71.1	8,084,096	15.7
2030	52,160,065	6,575,330	12.6	32,893,289	63.1	12,691,446	24.3
2040	51,091,352	5,717,528	11.2	28,872,500	56.5	16,501,324	32.3
2050	48,121,275	4,783,197	9.9	25,347,026	52.7	17,991,052	37.4
2060	43,959,375	4,472,656	10.2	21,865,175	49.7	17,621,544	40.1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12)

- 15~64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에 0~14세의 유소년인구 비중이 매우 낮아져 2060년에는 1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의 양적 변화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압축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확산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도 동시에 겪으면서 급기야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구문제의 양적·질적 변화가 경제, 산업, 노동,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 새롭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향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역 피라미드(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할 것임.

<그림 2-1> 60세 이상 인구 비율 추계

(단위 : %)



자료 : KOSIS 「장래인구추계」 Database 재구성

- 인구 증가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후기 고령층 및 초고령 인구의 증가세임. 위 <그림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5세 이상 99세 이하의 초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표 2-2>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합계	15-24세		25-49세		50-64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4	36,839	6,755	13.4	19,578	38.8	10,507	20.8
2020	36,563	5,679	15.5	18,650	51.0	12,234	33.5
2030	32,893	4,494	13.7	16,243	49.4	12,156	37.0
2040	28,873	4,396	15.2	13,759	47.7	10,718	37.1
2050	25,347	3,971	15.7	11,454	45.2	9,923	39.1
2060	21,865	3,201	14.6	10,698	48.9	7,966	36.4

출처 : KOSIS 「장래인구추계」 Database에서 재구성

- 인구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자료에 따르면(표2-2. 참조), 우리나라의 2014년 생산가능 인구는 3,684만명으로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2,187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 현상은 일하는 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로 나타나 세대 간 갈등을 촉진시킬 수 있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임.
- 그래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1명, 2060년에는 80.6명까지 증가하여 206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0.8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

<표 2-3> 부양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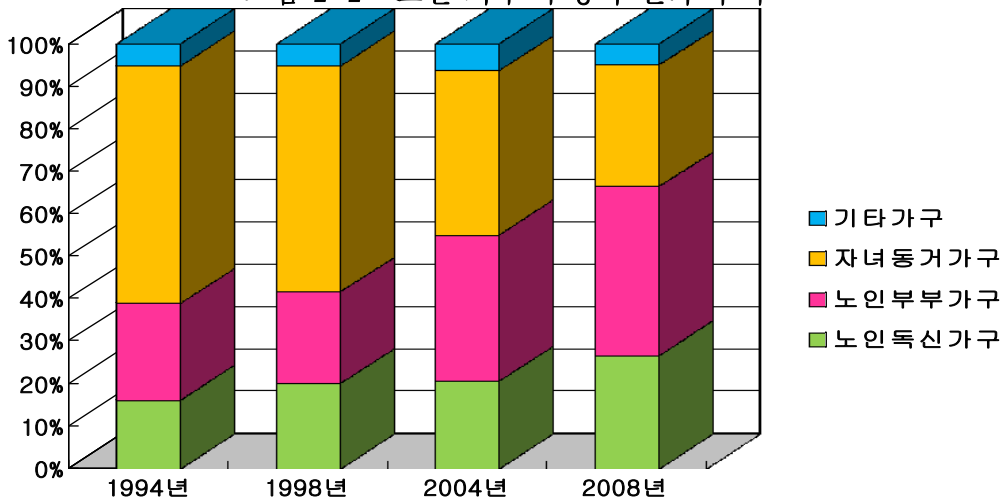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0-14세 인구수	15-64세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2013	7,370,118	36,711,849	6,137,702	36.8	20.1	16.7
2020	6,788,432	36,562,967	8,084,096	40.7	18.6	22.1
2030	6,575,330	32,893,289	12,691,446	58.6	20.0	38.6
2040	5,717,528	28,872,500	16,501,324	77.0	19.8	57.2
2050	4,783,197	25,347,026	17,991,052	89.8	18.9	71.0
2060	4,472,656	21,865,175	17,621,544	101.0	20.5	80.6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12)

- 이처럼 노년부양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나갈 주요 정책 현안으로 쟁점화 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미래와 노인복지 문제와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림 2-2> 노인 가구 구성비 변화 추이



-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 구성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임.
-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1인이 거주하는 노인 독거가구를 합해 노인 단독가구로 지칭함.
-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 199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준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단독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 고령화로 인한 주요 변화와 파급효과

-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고령화의 진전과 그 영향은 ‘인구의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 ‘인구 지진(demographic earthquake)’ ‘고령화 충격(aging shock)’ 등의 용어가 보여주듯이 부정적으로 표현됨.

### 가.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적 측면에서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핵심은 고령화로 인해 의존성 강한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해 복지출 등 사회적 비용 문제가 나타나면서 노인인구가 사회적 자



원을 소진시킬 것이라고 전망됨.

-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의 약화일 것임.
- 노동력 부족, 평균근로연령 상승, 생산적 자본축적 저하로 성장 잠재력 지속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임.
-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이용한 2030년까지 노동공급 전망치에 따르면 2012년부터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여 노동력이 연 10~15만 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2016년부터는 증가폭이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계청, 2011).
- 동시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거의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는 노동공급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연금 사각지대의 보완 요구 등 새로운 사회정책적 과제들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 부족, 성장 동력의 훼손 가능성이 예상됨.
- OECD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동력 성장의 둔화는 GDP(국민총생산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과거 20~30년간에 비해 향후 1.5% 정도의 GDP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2003~2007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값에 따르면,

은퇴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경우, 연령에 따라 퇴직확률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문외술, 2011).

#### 나. 사회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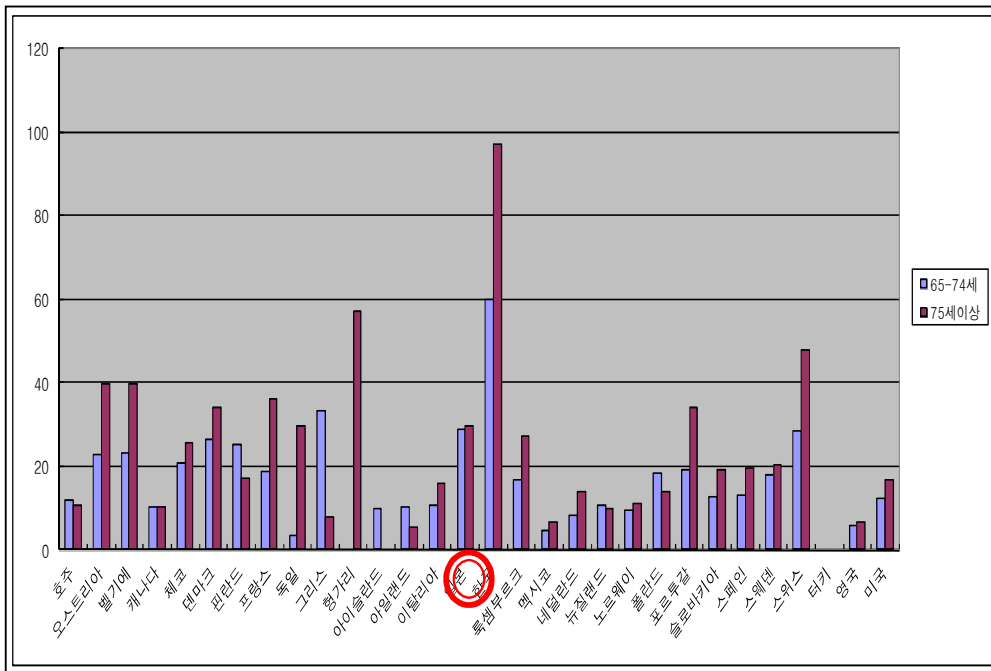
-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 연금 등 노인을 위한 복지지출 증대는 불가피함. 반면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상대적 규모가 감소함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대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이는 이미 우리사회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사회에서 경험한 현상임.
- 가령 2055년에 이르면 국민연금가입자수(10,928천명)가 노령연금수급자수(11,049명)보다 적어지기 시작하는 등으로 인해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08년 10.3%에서 2055년 101.1%, 2065년 119.7%(최고점)로 증가한 후 2078년 115.4%로 감소할 전망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또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적용인구수 간의 차이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 차이(적용인구수-가입자 수)는 2011년 872만명에서 2030년 1,07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은 증가하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 수입과 관련된 정책 변화 및 다른 분야의 지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보건,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총지출은 37% 증가하는 반면 총 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3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성명기, 2009).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조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가족 및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가족분화가 더욱 촉진되며 특히 노인 부부 및 노인단독가구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사적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인 부부·자녀 가구는 2009년 689만 가구(전체 가구의 42%)에서 2030년 671만 가구(33.8%)로 감소됨.
- 대신 1인가구는 330만 가구에서 471만 가구, 부부가구는 239만 가구에서 411만 가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이비붐 세대는 기대수명 연장과 조기퇴직에 따라 은퇴 후 퇴직기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비 등으로 자신의 은퇴에 대비하지 못하고 적은 자녀수, 개인주의적 가치관 강화, 자녀들의 취업난 등으로 가족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클럽 샌드위치 세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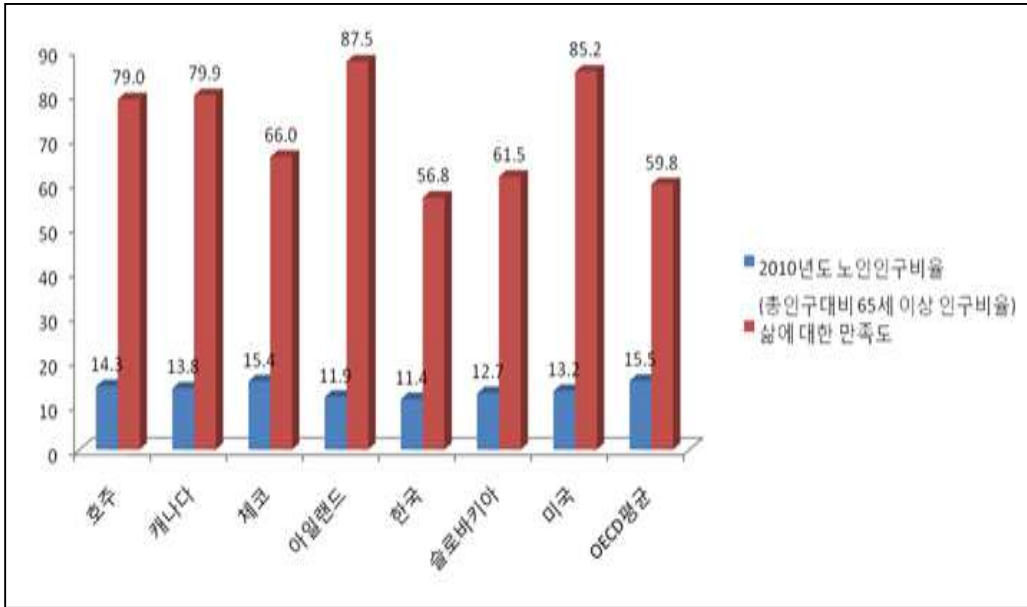
- 뿐만 아니라 퇴직연령(55세 정도)과 연금수급연령(60세)의 불일치로 수년간 소득 없는 생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는데다 공적연금마저 소득대체율이 40%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현 세대 노인에 비해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활발한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를 희망하나 노후준비 정도는 낮아 노후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3> 노인 자살률의 국제비교



자료 :OECD Social Statistics 2008

<그림 2-4> 65세 이상 노인 삶의 질 국제비교



자료 : Labour Force Statistic 2008, OECD Facebook 2008, Society at a Glance 2006,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1999~2004

## 제3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제도 현황 분석

- 은퇴 이후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에 따를 수 있음.
  - 첫째, 은퇴 이후 개인의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은퇴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에 있기 때문에 은퇴 시점을 연장하거나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지속되게 하는 방법이 있음.
  - 둘째, 은퇴 이후 직접적인 소득보전 정책을 통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임.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국민연금 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제도임.
- 본 장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크게 고용정책과 직접적 소득보전 정책으로 구분해서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1. 고령자 고용보장 정책

-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정책목표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청장년기 동안 유지해왔던 생애경력 직장을 더욱 오래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고용연장지원 제도가 있음.
  - 둘째, 고령자의 신규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고령자 대상 취업연계 및 지원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됨.

- 셋째, 고용연장 또는 신규 취업 지원 모두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연령차별금지제도가 이에 속함.
- 마지막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고령자 고용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제도

### 1) 정년 60세 연장법

-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서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까지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사실상 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던 임금피크제와의 연계도 의무화됨.

###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을 통해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시행된 정년연장장려금과 2008년부터 시행된 정년퇴직자재고용장려금 등 두 가지가 있음.

- 예전에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 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됨.
- 정년연장 지원금은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됨.
  - 정년 폐지 또는 정년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새로 설정(기존에 정년 규정이 없었던 경우)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 경과 다음날(종전 정년이 56세 미만인 경우는 56세가 되는날부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날부터 5년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연장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함.
  - 가령, 정년연장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간, 정년연장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간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됨.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은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임.



- 다만 계속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고용 전 3개월간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됨.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재고용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기간 동안 지급됨.
  - 가령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5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간 지급됨.
- 2012년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12,747개 사업장의 연인원 210,161명에 대하여 45,965백만원이 지원됨. 이는 전년도 187,752명에 39,848백만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베이비부머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고용노동부, 2013).
- 또한 고용지원금 중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은 2011년에 3,101명에 5,108백만 원과 1,872명에 2,912백만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3,515명에 6,573백만원과 2,533명에 4,112백만원이 지원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표 3-1>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현황

연도	지원건수	인원	금액
2002	66,565	270,902	39,980
2003	70,793	308,874	46,236
2004	63,972	266,119	41,299
2005	48,760	218,072	33,988
2006	48,424	229,092	36,025
2007	53,761	259,357	40,880
2008	54,023	273,945	48,062
2009	63,338	274,849	50,135
2010	59,923	217,559	43,688
2011	56,337	187,752	39,848
2012	74,094	210,161	45,965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백서」 2014.

### 3) 임금피크제 지원금

-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고령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고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됨.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임.
  - 2006년부터 노사합의로 56세(2006년~2007년은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54세부터 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별 150만원) 한도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함.

- 2008년에는 당초 2008년 12월까지 한시제도였던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시제도로 변경하고 임금감액 제외사유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삭제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도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2010년 12월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종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명칭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임금피크 유형별 특색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년보장형 지원은 폐지함.

○ 임금피크제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첫째, 정년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둘째, 재고용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재고용형(I)은 정년 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며, 재고용형(II)는 정년퇴직 후 축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임.
- 셋째, 근로시간단축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 임금피크제는 고령사회에서 중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일자리를 상쇄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음.

- 즉,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해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보장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는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면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짐.

-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 및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시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지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기준감액률은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에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이며 기준감액률은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다름.
  - 즉,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전 임금감액)은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재고용형(정년이후 임금감액)은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 근로시간 단축형은 50%임.
  - 한편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0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당시 폐지됨.
  - 아래 <표 3-2>는 201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임금피크제 유형별 도입 현황임.

<표 3-2>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구분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도입률	27.1	35.4	35.6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백서」 2014.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은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이 지급됨.
- 정년연장형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이 지원되며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재고용형의 경우 정년 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이 지원되며 정년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이 지원되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5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이 최대 10년간(재고용의 경우는 5년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아래 <표 3-3>에 나타난 것처럼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3>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

연도별	지원기업수	지원인원수	지원금액
2006년	40	226	579
2007년	72	584	1,638
2008년	98	997	3,032
2009년	135	1,497	6,489
2010년	158	1,869	7,861
2011년	176	2,843	8,624
2012년	194	2,377	9,763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백서」 2014.

## 나. 고령자 신규 고용 지원 정책

### 1) 고용센터

- 고용센터는 고령구직자에게 심층상담 및 직업진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함.
- 구직희망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면 구직신청일 이후 3개월간 유효하게 관리하며 적합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 함.
-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업무 흐름은 아래 <그림 3-1>에 나타나 있음.
  - 고용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은 우선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에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전문상담사에 의한 취업알선에 필요한 상담을 하게 됨.
  - 구직자의 취업능력에 따른 분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 연계해 주고, 동시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그림 3-1> 취업알선 흐름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구인업체 2~5곳과 실업급여수급자 50~100여명을 초청하여 현장 면접의 장을 마련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 신뢰감을 제공하고자 구직자와 취업알선 담당자가 구인기업을 함께 방문하여 면접을 지원하기 위한 “동행면접” 등을 실시함.
- 구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통한 신속한 취업을 위해 이력서작성, 면접기법, 창업특강 등 각종 “단기취업 특강”을 실시하며 고령자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서 5일간, 25시간에 걸쳐 취업에 필요한 자세, 취업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취업의욕을 제고하고자 하는 “성실프로그램”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 노사공동재취업(전직지원) 센터

- 전직지원서비스는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서, 대량 해고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됨. 1980년대 기업구조조정의 본격화와 더불어 활발한 사업을 벌이게 되었으며, 기업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서비스화가 진행됨.
- 용어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고용노동부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사업주의 지원 하에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내 전직지원서비스의 도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일반화되면서 시작됨. 초기에는 외국계 기업이 중심이 되어 도입하였고, 그 유효성이 알려지면서 국내의 대기업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함.

- 공공부문의 고용안정 인프라가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민간업체를 활용하여 공공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업의 자기비용으로 직접 활용, 전직지원장려금,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구매의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옴.
- 민간 부문에서의 전직지원서비스는 주로 사업주의 주도하에 제공되는 회사주도형 전직프로그램 서비스의 성격을 띠어왔으며 회사가 정부의 전직지원 장려금제도를 활용하여 외부 전직지원 컨설팅회사에 일임하거나, 외부의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띠.
- 고용노동부는 2001년 7월 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게 됨.
- 전직지원장려금은 2004년 14억 원, 2005년 15억원, 2006년 15억원을 집행하여 안정적 지원 추이를 유지해 옴. 2007년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가 증가하였으나 활용실적은 정책적 목표 수준보다 낮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남.
- 전직지원서비스는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임.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신설 배경에는 선진국과 같은 우수한 민간고용서비스의 발달이 제한된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 속에서 생겨남.
-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구매 방법에는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구 노사공동재취업센터)와 제대군인 재취업센터가 있음.



-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는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퇴직하는 실직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및 창업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2005년에 노사공동재취업센터로 개소하였으며, 2010년도 까지 14개 지역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제대군인 재취업센터는 2008년 보훈처가 전국의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 운용됨.
- 이들 전직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와 통합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개편되어, 중장년층의 전직 및 취업 알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3)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 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지역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견전문인력<sup>1)</sup>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음.

---

1)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④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⑤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⑥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⑦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⑧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등임.

- 2012년 현재 6개소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운영중이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취업알선, 구인업체의 고용상담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경력자들에 대한 직종별 인력풀을 구성 및 운영하여 구인, 구직 알선 및 고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부터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가 통합되어 40세 이상의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에게 전직 지원 및 재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전국 26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4> 중견전문인력 연도별 취업 등 실적 현황

연도별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알선	취업
2009년	427	879	889	179
2010년	2,275	4,430	7,052	947
2011년	7,226	7,781	10,500	2,732
2012년	12,132	27,147	13,568	5,680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백서」 2014.

#### 4)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령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등 민간단

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취업알선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2012년 현재 모두 44개 기관이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임.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 알선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운영 실적에 따라 사업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운영성과가 높은 21개 기관에서 고령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상담-훈련-취업지원」을 연계한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2011년부터 고용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intranet)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2013).

<표 3-5> 고령자인재은행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현황(단위 : 건)

연도별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알선	취업
2008년	84,960	80,991	98,442	67,381
2009년	88,163	91,193	120,199	72,438
2010년	94,193	102,698	130,845	76,559
2011년	94,134	104,474	126,710	83,322
2012년	88,432	93,959	11,576	86,430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백서」 2014.

#### 다. 연령차별금지제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령차별금지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이 법은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기원을 두고 있고 인력모집·채용분야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연령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임.
  - 구체적으로,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 해소를 통해 고령자 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연령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 연령차별이 금지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모집·채용, 임금, 임금 이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분야 등임.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 및 위반시 법적 시정수단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까지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직접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간접차별은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라도 특정 연령집

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이 법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증진을 위해서 정부와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가령,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고령근로자 활용 필요성 및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 법률이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령은 55세 이상이지만, 필요한 경우 50세 이상 55세 미만 연령자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법적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신현구, 2011).
- 이 법은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만약 정년이 현저히 낮게 정해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 그리고 제조업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

업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6%, 그 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의 3%를 기준고용률로 정하고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함.

- 이외에도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령자·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정,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률 포함한 취업알선 기능 강화,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금지와 고용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쳐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만한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으며 단지 고령자 고용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음.
  - 예를 들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 연령 60세를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60세 정년에 도달해 있지 못함.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4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9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정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2,327개로 전체의 약 94%이며, 나머지 142개 사업장(5.8%)은 정년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뿐만 아니라,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가운데 단일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1,779개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2세로서 60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정진호 외, 2010).

- 과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57.2세, 2003년 56.7세, 2006년 56.9세 등으로 나타나서 실제 정년 연령의 연장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신현구, 2011).

## 라. 일자리 창출 사업

### 1)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고령자 대상 직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임.
-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은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크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복지형, 교육형, 공익형으로 구분됨.
  - 공익형의 경우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유형임. 이에 해당되는 일자리의 예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2012년 현재 모두 143,478개의 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 분야에서 창출되어 노인일자리사업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임.

- 교육형은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자리 유형임. 예를 들면, 강사파견사업, 숲생태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통번역사업 등이 교육형 일자리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2012년 기준 모두 27,505개의 교육형 일자리가 창출된 상황임.
  - 복지형 일자리는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유형임. 예컨대, 거동불편노인돕기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문화복지 개선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됨.
  -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1일 3~4시간, 1주 3~4일 근무를 조건으로 매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참여를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음.
-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크게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됨.
-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유형임. 여기에 해당하는 일자리 예는 아파트 택배사업, 지하철 택배 및 지역영농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이 있으며 2012년 기준 16,101개의 일자리가 이 분야에서 창출됨.
  -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



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유형임. 예를 들면, 시험 감독관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일자리 사례임. 2012년 기준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모두 9,349개가 창출됨.

<그림 3-2>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목표 및 실적 추이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lt;표 3-6&gt; 노인일자리아업 유형별 실적

연도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합계
	공익	교육	복지	시장	파견	
2004	28,373	3,800	-	1,748	1,206	35,127
2005	31,101	7,063	4,581	3,633	931	47,309
2006	47,195	8,708	17,809	7,459	1,867	83,038
2007	57,015	13,240	33,160	9,378	2,601	115,646
2008	61,732	14,493	34,164	11,530	4,451	126,370
2009	134,975	16,523	44,299	17,141	9,061	222,616
2010	126,894	17,480	47,302	15,373	8,781	216,441
2011	129,066	20,317	45,097	14,967	10,380	225,497
2012	143,478	27,505	46,727	16,101	9,349	248,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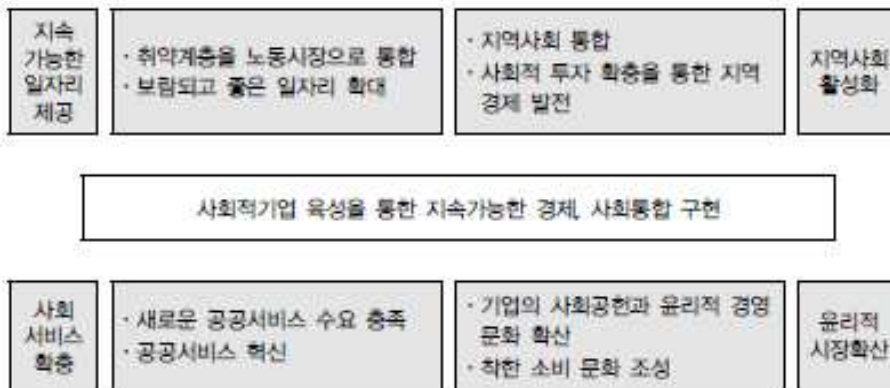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kordi.go.kr>)

## 2)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임.
-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및 시행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게 됨.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정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9차례의 인증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의 수는 초기에 396개에서 950개로 2.4배 증가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도 2007년에 1,403명에서 2013년에 21,574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3-3> 사회적기업의 역할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백서」 2014.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형 일자리 창출

- 협동조합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자조조직(self-help)이며, 조합원들이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인간중심의 조직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 운영상 의결권에 있어서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에 대한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또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이 부여되며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의 원칙 등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임.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존 주식회사이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소액 소규모 창업과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역할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임.

<표 3-7>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eratives.go.kr](http://www.cooperatives.go.kr)

-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에 대

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부터임.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빈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민간 지역운동단체에서 서구의 협동조합 모델을 대안적인 지역경제 회생 모델로 받아들여 꾸준히 실험해 왔음. 그러다가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생산자 협동조합의 일부는 자활공동체 모델로 편입되어 제도 내에서 실험이 계승되기도 함.
-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인 2000년대에 접어들며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실험이 본격화되었음. 그러나 협동조합이 주류 경제이론에 비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화 작업의 부족과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으로 인해 정책당국이나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음. 그러다가 2007년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그 이후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안착되기 시작하였음.
- 2012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lt;표 3-8&gt; 협동조합 현황(2013년 10월 현재)

구분	신청(신고)/처리 건수누계 (8.31일 기준)	신청(신고)/처리 건수누계 (9.30일 기준)	신청(신고)/처리 건수누계 (10.31일 기준)
일반협동조합	2,402/2,314	2,598/2,533	2,811/2,750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1/8	11/10	11/10
사회적협동조합	117/66	131/78	127/9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1/-
	2,530/2,388	2,740/2,621	2,950/2,851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cooperatives.go.kr>

## 2. 고령자 소득보장 정책

### 가.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이는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임.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함께 처음 등장했으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제불황 속에서 1974년 1월 실시 예정이던 국민연금제도는 무기한 연기됨. 이어

1986년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결과 국민부담 능력이 크게 향상된 여건 등에 힘입어 1986년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됨.

- 1988년 처음 시행될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199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전 국민 연금 시대가 개막됨.
- 국민연금 제도는 모두 네 가지 가입 유형을 포괄하고 있음.
  - 첫째,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둘째, 지역가입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적용대상으로 지역가입자가 됨. 다만,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됨.
  - 셋째, 임의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

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넷째, 임의계속가입자로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음.
- 다른 사회보험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에 대한 권리는 가입과 보험료 납부라는 의무에서 기인함.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의 주요 원천이 되는데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sup>2)</sup>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함.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현재 보험료율은 9%임.
- 퇴직 이후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받게 될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아래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음.

---

2)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됨.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게 됨.



<표 3-9>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매월지급)		일시금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 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 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 지 못할 경우 장애 보조적, 보상 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 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수급하게 될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됨.
- 기본연금액은 소위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담지하고 있는 A값(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 산정되는 B값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래 <그림 3-4>는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을 나타내는데 개인 연금 가입자의 A값과 B값에 가입기간과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상수를 곱해서 산정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4> 기본연금액 산정 공식

$$\left[ \frac{2.4(A+0.75B) \times P_1}{P} + \frac{1.8(A+B) \times P_2}{P} + \frac{1.5(A+B) \times P_3}{P} + \frac{1.485(A+B) \times P_4}{P} + \frac{1.2(A+B) \times P_{23}}{P} + \chi \frac{(A+A) \times C}{P} + \chi \frac{(A+1/2A) \times 6}{P} \right] \times (1+0.05n/12)$$

1988-1998년                  1999-2007년                  2008년                  2009년

2028년 이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 \*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즉,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 균등부분)
-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 \*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n : 20년 이상을 초과하는 가입 연수

<표 3-10> 연도별 소득대체율 변화와 연금급여 상수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상수	2.4	1.8	1.5	1.2 (매년 0.015씩 감소)
소득대체율	70%	60%	50%	40% (매년 0.5%씩 감소)
가입월수	P1	P2	P3 ... P22	P23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가입자의 총급여액은 상술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부양가족연금액이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임.
- 2013년 기준,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 241,550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연 161,000원(1인당),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에 대해

서는 연 161,000원(1인당)이 추가로 산정됨.

○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게 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에 해당되는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 등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등이 있음.

- <표 3-11>과 <표 3-12>에서는 노령연금의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과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제시되어 있음.

<표 3-11> 노령연금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기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가입기간 10년>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50%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10%를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6%를 증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http://www.nps.or.kr))

<표 3-12>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 <표 3-13>은 국민연금통계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사업장 가입자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3년 현재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는 20,680,148명이며 이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가 11,838,256명, 지역가입자가 8,544,718명을 차지함.

<표 3-13>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연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120,374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96.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2,085,568	-	50,514	15,640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03.12	17,181,778	423,032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04.12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009,142	7,403,424	21,752	55,250
'05.12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1,969,017	7,154,658	26,568	23,713
'06.1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07.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1,976,585	7,086,558	27,242	27,148
'08.12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09.12	18,623,845	979,861	9,866,681	8,67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10.12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11.12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12.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13.09	20,680,148	1,282,145	11,838,256	8,544,718	1,956,620	6,588,098	187,500	109,674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2013.9.)

나.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서 2013년 3월~7월까지 국민행복연금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2013년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4년 5월에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 2014년 7월 도입을 앞두고 있음.
-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짧은 역사 속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다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의 소득보장 방안으로 출발함.
-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 지급. 소득과 자산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됨.
-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특히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못되거나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불충분한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즉 30만 원 이하<sup>3)</sup>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경우 모두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그 외의 경우 19~10만원까지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됨.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됨.
-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 + 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

---

3)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을 감안한 것(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5.2)

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함.

- 국민연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게 되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 됨.
- 30~40 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됨. 가령, 국민연금이 4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됨.
-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약 406만 명으로 추산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5. 2.).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시행의 역사가 짧고 제도적 미성숙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들 가운데 다수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노후 소득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임.
-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7.7%가 최저 생계비 미만의 빈곤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4> 노인 빈곤율

구 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6	40.4	28	31.3
2007	41.4	28.6	31.9
2008	42.1	29.7	33
2009	47.8	32.3	35.6
2010	49.0	32.3	35.3
2011	49.6	34.2	36.9
2012	47.7	33.6	35.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빈곤통계연보」

- 이처럼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을 위한 생계보장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빈곤제도로써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공포와 함께 2000년부터 실행에 들어간 제도임.
  -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원래 생활보호제도로 출발하였음. 그래서 생활보호제도는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이며,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음.
  -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됨. 당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통해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이에 따라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권리적 성격으로 규



정하고 실질적인 생계보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하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기존 생활보호제도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해 선별적이고 시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러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은 폐지됨.
  -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우 수급으로 인해 근로동기를 저하시켜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국민의 생계가 어려울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성이 인정되어 수급권의 개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권리성을 용어에 반영해 ‘보호’ 대신 ‘보장’을, ‘대상자’ 대신 ‘수급권자’ 등으로 변경해 제도의 변화된 성격을 명확히 드러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됨.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2014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03,403원, 4인 가구 기준 1,630,820원임.
  -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부양 의무자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음.
  -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 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함.
  - 주거급여는 수급권자의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 전혀 주택이 없거나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유지를 위한 임차료나 수선, 유지비로 지급함.
  - 교육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 유지를 통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빈곤의 세대 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 급여 내용은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함.
  - 장애급여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필요한 장제조치를 행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 해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출산여성에게 지급됨.
  -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를 선별하여 적합한 자활사업을 제공하고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 및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일차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본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며 가족이 없으면 1종으로 구분되어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전혀 없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2중으로 구분되어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됨.

### 3.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외국 선진사례

- 선진국들은 노인복지정책에서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음. 이들 선진국들은 노인복지정책의 오랜 발전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정책변화들을 시도해 왔음.
- 선진국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의 노인복지의 소득정책과 고용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음. 따라서 여기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가. 프랑스

##### 1) 소득정책

- 프랑스는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보장을 위해서 연금과 노인대상 사회부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먼저 연금정책에는 기본연금, 보충연금, 보조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연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실시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규모가 큰 기본적인 정책임. 여기에는 일반조합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조합연금, 농촌공제조합연금, 도시의 자영인을 위한 자율조합연금 등이 있음.
  - 보충연금과 보조연금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실시되는 일종의 퇴직연금의 유형에 속하는 것임. 다만 보충연금은 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보조연금은 임의적 성격의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 노인들의 적절한 소득보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정책이 갖는 중요한 역할이 연금의 높은 임금 대체율과 노인소득보장 재원의 높은 비중을 지니고 있다는 것임(임춘식 외, 2005: 220-221).
  - 일반조합연금은 50%, 공무원 연금은 80%, 퇴직자의 대부분은 기본연금 외에 보충연금과 보조연금 등을 모두 합치면 평균 90% 임금 대체율을 보이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노인대상의 사회부조 급여정책은 연금 비수급자 혹은 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 혹은 소득의존 상태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임춘식 외, 2005).
  - 비기여적 급여로서 노령최저소득수당은 노인들의 탈빈곤을 위한 급여로서 일정 자산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혹은 근로 무능력 상태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음.
  - 노령최저소득수당은 기초수당으로 연금 수급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고, 만일 수급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노령특별연금을 지급하게 됨.
  - 또한 보충성 급여에서는 연금이나 기초수당을 받는 노인의 현재 소득수준이 법정 최저생활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 그 차이만큼을 지급하는 것임.
- 특히 1997년부터는 일정 자산 이하의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는 특별의존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2001년 7월부터는 동일한 조건(의존 상태 등)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경제적 생활보장 권리 원칙하에서 개별자율화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음.

## 2) 고령자 고용정책

-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1950년대부터 입법 시행해 오고 있으나 크게 고령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혹은 조기퇴직을 장려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어 왔음. 여기서는 1990년 이후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와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함.
- 1990년대 하반기부터는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가능한 억제하고 근로기간을 연장시키는 고용정책을 펼쳐 왔음.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조기퇴직의 억제, 고령자 근로자의 계속 고용 유도 등을 통해서 연금 수령 개시 시한을 더 연장하는 연금 정책과도 연동시켰음.
  -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 시작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여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예방·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2001년에 제정된 고용차별금지법과 중견경력 소유자의 직업훈련 강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령 근로자의 일부만 취업대상으로 삼는 고령자의 선별적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조치들을 완화하게 되었음 (임춘식 외, 2005: 225-226).
- 2003년에는 연령 제한없이 연 20시간의 직업훈련 참여 자격을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특히 이런 조치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되고 전 산업 간 협정 체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이와 더불어 2003년에 연금개혁법이 제정되면서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 억제와 근로기간의 연장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계속고용의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 나. 독일

### 1) 소득정책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연금보험제도에 기반하고 있음. 노인의 경제적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내용안에 포함되어 있음.
- 독일의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나누어져 있고, 이는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있음. 예를 들면, 사회보험은 개인의 수입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지만, 사회부조는 개인의 부담금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차원에서 급여하는 것임.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사회보장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1970년 3월 31일에 마련된 사회법에서부터 연유되고 있음. 사회법은 인간의 삶의 보장을 기본권리와 사회정의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성격으로 자리매김 되었음.
- 독일의 노후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사회보험은 크게 연금보험, 건강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수발보험 등으로 나누고 있음 (임춘식 외. 2005).
  - 연금보험에는 노동자, 사무원, 광산근로자 연금보험이 있고, 또한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농민을 위한 노후보조, 수공업자를 위한 노후보장, 공무원의 연금, 자유직업 종사자의 노후보장제도 등이 있음.
  - 이러한 연금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노인(충분하지 못한 소득

과 재산, 무직, 부양자 없는 경우)들을 위해서는 생계비 보조와 특별한 상황(수발, 노년)에 대한 사회부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노인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성장의 한계 등으로 국가의 연금재정 문제와 젊은 세대의 사회적 부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일대 연금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음.
- 2010년을 전후로 근로소득 대비 연금급여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 결과 2004년 7월 이후 연금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2005년 이후 부터는 연간 증가분을 고려한 연금 산정방식을 채택해 연금 효율을 적용하여 연금급여의 재정 위기에 대응해 오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독일에서는 조기은퇴를 위한 인센티브는 폐지되었고, 동시에 고령 근로자 취업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도 폐지되었음. 사실상 독일의 노인들은 연금재정의 위기 압박 속에서 연금 수령 시작 기간이 연장되면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아울러 노인들 스스로 노후생활 보장도 일부분 감당해야 할 것임.
- 독일의 사회(공공)부조 제도는 오랜 역사적 전통(빈민구제, 빈민보호, 자선, 규휼 등)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은 사회보험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공적부조 정책 프로그램임.
- 독일에서 사회부조는 법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제도이므로 65세 이상 노인층이 사회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에 사회(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됨.

-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상 또는 신체상 이유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명기된 노인의 빈곤생활 방지를 위한 지원을 권리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큰 틀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까지 사회연금과 사회(공공)부조에 의해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층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사회연금 재정의 위기 등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독일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개인 및 회사의 재정 부담을 강조하고 있음.

## 2) 고용정책

- 서구 선진국가들의 정년연장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음. 독일은 1996년에 초고령사회를 맞아 연금 재정의 압박을 완화하고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노인 근무시간 조정법」을 제정하였음.
- 「노인 근무시간 조정법」에 근거하여 독일 정부는 근로기간의 연장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을 가능토록 하는 토대를 만들었음. 그래서 독일은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조기퇴직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을 2001년에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음.
  - 근로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금 수급 자격도 65세 이후로 주어지게 됨.
- 이처럼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갔고, 정년에 가까워지는 고령 근로자



들을 위한 ‘시간제 노인부분고용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룸. 이 제도에 의해서 노인들은 시간제 부분 근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됨.

○ 이와 더불어 독일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그리고 직업재교육 등의 지원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고승한 외. 2013: 70).

-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프로그램(고령자를 위한 지역 근로협정 프로그램, 퇴직자 진로전화 자치운영, 민간고용알선 단체들의 고용알선촉진, 중고령자 및 직업자격 미달자 대상 직업교육 지원 정책) 등이 있음.

- 고령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고용지원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직업훈련향상 지원 바우처 제도(250인 이하 중소기업의 45세 이상 근로자 대상), 실업 및 구직자 생활비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고령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위한 임금차액보조금 지원, 고령자 창업자들을 위한 기초자본금 지원 등이 있음.

- 정부는 노인부분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노인부분고용제도는 중소기업의 고령 근로자 재고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 독일 정부 차원에서 노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인 재취업교육 정책을 아주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다시 말해서 고령자 취업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노인들이 계속 직업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음.

- 특히 고령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1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한 지속교육 시 훈련비를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이처럼 노인 재취업교육정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있음. 그래서 독일 정부는 지역 고령자 고용촉진협정 정책인 ‘Initiative 50 Plu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용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고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근로능력을 유지하여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고령 근로자의 근로체계, 근로조직, 직무조건과 환경 등을 고려한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4.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고령자의 노후소득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와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 정책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령자 대상 고용정책과 소득보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앞으로 보다 주안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 가. 정년연장의 내실화

- 다양한 고령자 대상 고용창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다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무엇보다 현재 고용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

- 가령 생애 주요 직장에서의 근로기간 연장은 공적제도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 노후소득 안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연장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동법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질지는 의문임.
- 따라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60세까지 정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과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 안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의 선진사례(프랑스,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기퇴직 억제와 노인고용 활성화 정책으로 정년연장법은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년연장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나.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화

- 실질 퇴직연령의 상향과 더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의제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고용정책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미약하거나 혹은 다른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고용효과를 상쇄시키는 등 그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임.
- 그러한 가운데 일자리창출은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며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는 가운데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고령근로자의 노동 참여를 유인할 핵심 기제로 보임.

- 현재 가장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획일화된 사업내용과 저임금 정액지급방식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통합적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명확한 목표설정을 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난점은 첫째, 다양한 욕구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며 둘째, 소득보장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것임.
  - 즉 경제적 욕구, 사회적 욕구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 이와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판적 성찰에 입각해 향후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할 것.
-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의 장기적 목적을 경제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 소득보장의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참여의 기능에 둘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참여형 일자리와 소득보장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해 사업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 가운데 대상이나 사업내용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교통신리가 필요하며 대상층을 보다 확대시켜야 함.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속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차세대 고령자 일자리 사업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향후 일자리 창출에 있어 보다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함. 노인일 자리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공익성을 고려한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 왔다면 향후에는 보다 고령자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수요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강도의 육체노동 또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정신노동에 취약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멘토 등에 관한 일자리 아이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될 필요가 있음<sup>4)</sup>.
- 또한 고령자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의 경우 풍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3섹터(예,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등)에서 각종 후원 및 결연사업, 대외협력, 마케팅 등의 업무 아이템도 개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부 고령자의 경우 조직 내에서 젊은 세대와의 융화 및 협력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단적 협력을 요하는 일 보다는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고령자의 특성에 더욱 적합할 수 있음.

---

4) 예를 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상담(법조인), 건강 상담(의사), 경영상담(경영인) 등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전문성을 살리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멘토, 말벗 서비스 등에 관한 아이템 개발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각종 모니터링 사업, 특히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문에서 사례관리와 관련된 아이템의 개발이 가능함. 이와 동시에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유지도 필요함.
- 고령자는 젊은 세대에 비해 지역사회와 밀착(community-based)된 특성을 보임.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고령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고령자가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아이템의 발굴도 유의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 근로자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엿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촉진협정과 같은 사회적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앞으로 백세시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고령자 일자리 아이템 개발도 가능함. 즉, 백세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생애주기 중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길어지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노년층이 전기노년층(연소노년층)와 후기노년층(고령노년층)으로 구분될 것이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한 채 혼자 거주하는 노인층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임.
- 고령층의 양분은 전기노년층이 후기노년층을 돌보는 노-노케어형 일자리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줌.
-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수는 육체적 에너지가 많이 소요

되는 아이템으로서 후기 고령층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주거공간과 일자리를 결합한 생활공동체형 일자리와 같은 주거결합형 일자리를 개발해 일자리를 위한 이동을 없애고 홀로된 노인들의 생활공동체까지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노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고용 취약계층으로서 고령층을 사업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은 통합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모두 ‘사회적경제 생태계’라는 하나의 생태체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와 제도적 결합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중고령 근로자의 성공적 재취업 이행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화

-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은 상대적으로 고용연장 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재취업 지원 정책은 다양한 전달체계만 설정하고 있을 뿐 정책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중고령 근로자가 성공적으로 제2의 경력(직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중 무엇보다 생애주요직장과 두 번째 커리어 사이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애 주요직장에 종사하는 동안 매끄럽게 제2의 경력(직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함.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작업장 문화 속에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중고령 근로자의 대부분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됨.
- 따라서 4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가 직업생활 중 제2커리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
- 가령, 임금피크제에서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는데, 퇴직을 앞둔 중고령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근로자 재충전 및 제2커리어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휴가제도 보급(가칭 “퇴직준비 휴가제”)을 통해 생애 주요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그 다음 커리어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덧붙여 “근로자 다기능생활(Multi-life) 지원” 차원에서 기업 내 각종 동호회(예, 여가, 자원봉사 등)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비롯해 각종 교육 및 강좌 수강 지원, 제2 경력을 위한 이중직업(two-job)이 가능한 여건 창출 등을 통해 보다 청·장년기 동안의 근로환경을 유연화시켜야 함.
- 동시에 중고령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노후 커리어설계를 비롯한 후 설계에 참여하도록 기업 참여를 제도화시킴으로써 4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가 퇴직 후를 대비한 생애설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라.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확립

- 향후 중장년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이 없이는 단편적인 참여에 그치고 말아야 할 것임. 즉, 현재의 평균 정년 연령인 55세부터 100세까지 인생 후반부 45년을 위한 ‘재교육’의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함.
- 이는 단순한 직업능력 개발의 관점을 넘어 인생 전반부에 누적된 피로를 극복하고 탄력성(resilience)을 회복시킴으로써 인생 후반부를 살아갈 수 있는 동력 제공의 관점 하에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함.
- 현재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연계를 위한 교육을 넘어 사회공헌, 여가개발형 일자리 등 포괄적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원 등 보다 고등 교육기관이 고령자 인적자원개발에 투입되어야 함.
- 독일의 노인 재취업교육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노인 재취업과 직업교육 훈련정책 프로그램은 노인 시간제 부분고용제도와 연계하여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임.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노인의 생애주기 특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유형, 직무조건과 환경 그리고 연금제도 등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마.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고용 창출의 거점으로서 제3섹터 활성화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 형태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약 1/3(현 노동시장에서는 55세 이상이 직접 피용자로 고용되기 보다는 단독고용주의 자영업의 형태가 매우 높게 나타남)인 것으로 분석되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469개소에 대한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2009년)결과, 전체 상시근로자 2,748천명 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는 203천명으로 고령자 고용률은 7.41%로 나타남(표 3-15. 참고).

〈표 3-15〉 고령자 고용현황(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고용률
계	2,469	2,748,116	203,635	7.41
농림어업	3	1,726	119	6.89
광업	4	3,072	348	11.33
제조업	789	1,006,603	32,836	3.26
전기가스수도업	43	42,075	3,057	7.16
건설업	97	135,149	10,710	7.92
도매 및 소매업	135	156,212	2,267	1.45
숙박 및 음식점업	53	76,086	3,611	4.75
운수업	130	123,654	14,097	11.38
통신업	32	40,582	875	2.16
금융 및 보험업	129	288,231	4,689	1.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	20,387	7,109	34.87
기타서비스업	1,024	854,339	123,947	14.51

자료: 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 조사」 2009

- 고령자 고용률은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부동산 및

임대업(34.9%), 기타서비스업(14.5%), 운수업(11.4%), 광업(11.3%), 건설업(7.9%) 순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업(2.16%), 금융 및 보험업(1.63%), 도매 및 소매업(1.45%)등은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업종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부 문별 인력부족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3-16>에 잘 나타나 있음.
  -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광공업, 제조업 등임.
  - 이 가운데 운수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고령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이며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는 다수 업종의 특징은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소위 3D업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통계치는 현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조건과 고령자의 특성 및 욕구가 매칭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한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의 영역에서도 고용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영역은 소위 “제3섹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되는 영역임.
- 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대안적 부문으로 흔히 협동조합(co-operatives)이 중심인 유럽식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나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이 중심인 미국식의 비영리 부문을 지칭함(김혜원 외, 2008).

〈표 3-16〉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현원, 부족인원 및 부족률(5인 이상 전 규모)

구 분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전산업	8,128,516	229,730	2.7
광공업	2,707,659	98,133	3.5
광업	14,125	208	1.5
제조업	2,693,533	97,925	3.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420,858	131,596	2.4
전기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56,408	304	0.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3,284	738	1.4
건설업	655,101	17,385	2.4
도소매숙박음식업	962,764	29,246	2.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558,268	52,089	2.0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1,244,725	32,877	2.6
도매 및 소매업	738,779	19,654	2.6
운수업	451,349	18,770	4.0
숙박 및 음식점업	223,985	9,591	4.1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3,904	9,030	2.6
금융 및 보험업	403,064	4,773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3,328	1,931	0.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5,018	8,634	2.2
산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40,700	10,313	1.9
교육서비스업	518,172	7,524	1.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40,130	14,366	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541	1,617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07,094	6,96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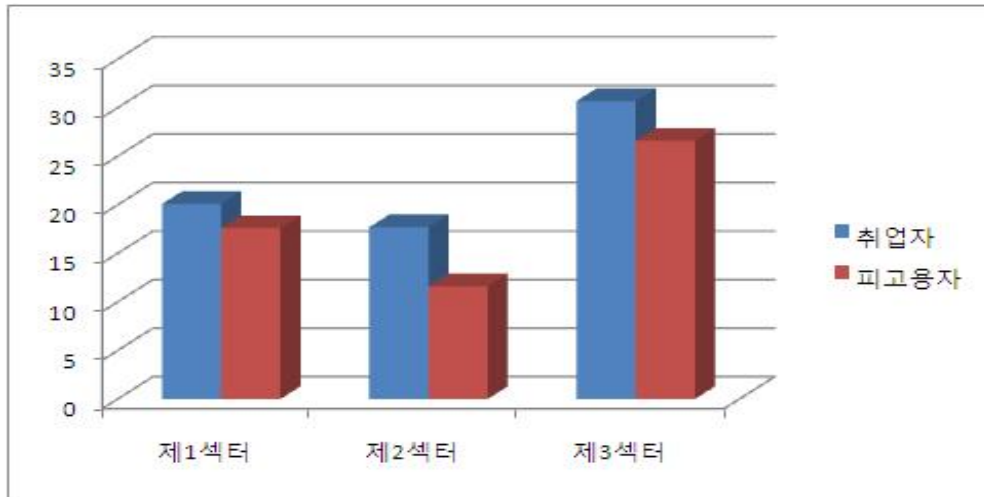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2009년 하반기

○ 제3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정부의 실패로 대변되는 1섹터

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대변되는 2섹터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데 있음.

-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처로서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정부의 실패) 제3섹터는 사회적 공익성과 시장효과를 갖는 틈새(niche) 일자리 또는 창의적 일자리 발굴의 주체로 기능함.
- 2003년도 기준 산업별로 10억원 투자시 취업자 수 및 피고용자수 증가규모를 계산한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정부부문 20.1명, 민간영리부문 17.7명인데 비해 제3섹터는 30.7명에 달해 가장 부각됨.
- 또한 10억 원 투자시 피고용자 증가 규모는 정부부문의 경우 17.6명, 민간영리부문은 11.6명인 반면 제3섹터는 26.6명으로 섹터 가운데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영역이 제3섹터인 것으로 분석됨(김혜원, 2008).
- 이러한 제3섹터의 가능성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부상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향후 고령자 재취업 알선에 있어 제3섹터형 취업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재교육 시스템등을 구축해 적극적인 고령자 재취업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그림 3-5> 섹터별 고용유발효과



자료 : 김혜원(2008)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분석」에서 재구성

## 제4장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과 문제점

### 1.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 가. 제주지역의 노인인구 변화

- 제주지역의 전체 인구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고, 특히 2013년에는 60만이 넘어섰음. 제주의 노인인구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 12말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3.1%를 넘어 조만간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표 4-1. 참고).

<표 4-1>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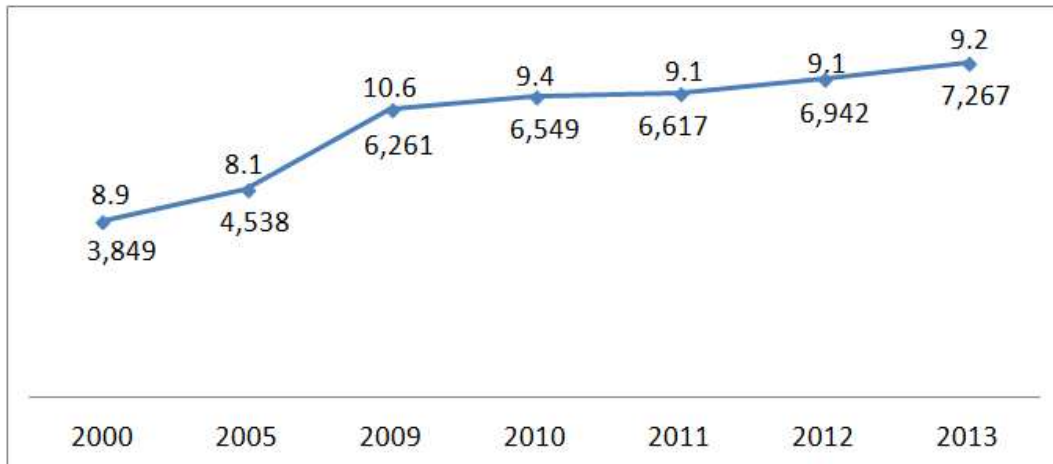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인구(A)	542,368	557,569	567,913	571,255	576,156	592,449	604,670
65세 이상 인구(B)	43,334	55,795	66,702	69,641	72,580	76,060	79,455
80세 이상 인구(C)	8,313	10,437	12,589	13,700	14,536	15,762	17,405
85세 이상 인구(D)	3,849	4,538	6,261	6,549	6,617	6,942	7,267
B/A(%)	8.0	10.0	11.7	12.2	12.6	12.8	13.1
C/B(%)	19.2	18.7	18.8	19.7	20.0	20.7	21.9
D/B(%)	8.9	8.1	10.6	9.4	9.1	9.1	9.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0세와 85세 이상 장수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커다란 증감 변화는 없음.
- 특히 제주지역의 8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3,849명에서 2013년에 7,267명으로 증가하여 88.8% 증가하였음. 이처럼 8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는 100세 시대 도래에 대한 사회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음.
- 제주지역의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의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박삼욱 외(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전국에서 장수도(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가 항상 1위를 차지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 인구변화를 보면, 2000년에 3,849명, 2005년 4,538명, 2006년 4,923명, 2007년 5,235명, 2008년 6,112명, 2009년 6,261명, 2010년 6,549명, 그리고 2011년 6,617명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지역의 85세 이상 장수노인은 88.8%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그림 4-1. 참고).
- 제주장수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현상은 100세 시대의 장수 사회 도래에도 연계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 연도별 제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인구 변화



자료 : 통계청 KOSIS,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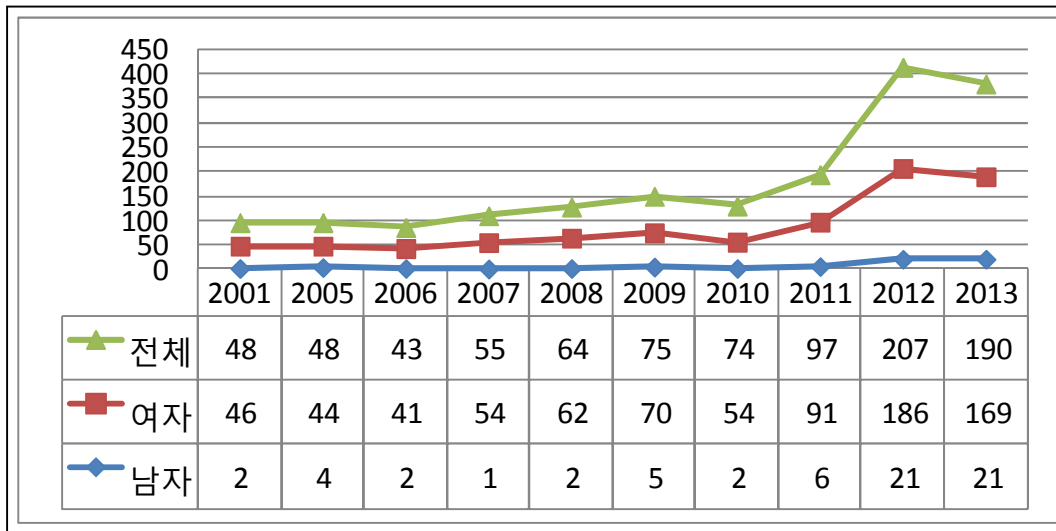
○ 제주지역의 100세인 장수노인 인구변화를 살펴보면(그림 4-2. 참고), 2001년에 48명, 2005년 48명, 2006년 43명, 2007년 55명, 2008년 64명, 2009년 75명, 2010년 74명, 2011년 97명, 2012년 186명, 그리고 2013년 190명으로 나타남.<sup>5)</sup>

- 2011년에 100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2012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주민등록인구통계 상의 자료와 실제로 제주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수와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5) 제주지역의 100세인 인구변화를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상에 나타난 100세 이상 노인인구 수와 실제로 도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그림 4-1>에 제시된 2012~2013년도 10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에 나타난 것임. 주민등록인구통계 상에 나타난 100세 이상 노인에는 실종, 사망 미신고, 거주불명 등으로 인한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2013. 5)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기준으로 제주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확인된 10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120명으로 보고되었음.

- 따라서 제주지역의 100세인 장수노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임. 2001년에 48명에 불과한 100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2013년에 190명으로 늘어나 100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그림 4-2> 제주지역 100세 장수노인 인구변화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각 년도.

- 이처럼 제주지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100세인 장수인구 수는 현재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sup>6)</sup>
- 제주지역의 노인인구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1~2년 앞서 빠른

6) 제주지역의 100세인 인구추이 전망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없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100세인 인구증가 전망치는 보고되었음. 통계청(KOSIS. 2011. 12) 장래인구추계 전망치에 따르면, 2006년에 10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1,160명이고, 2010년 1,982명, 그리고 2020년 8,212명으로 나타나 향후 10년 후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이 2015년에는 가능하리라 예상됨. 이와 더불어 장수노인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100세 이상 노인인구를 포함한 제주노인 전체의 노후생활 문제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에 단·중장기적 노인복지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전환기에 접어들었음.

## 2.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실태

### 가. 제주의 고령사회 주요 대응과제

-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15년에 고령사회로,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한국은행 제주본부, 2005).
- 중앙정부가 2010년에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1~2015)」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를 수립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세인 장수노인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체계화하는 일환으로 법적·제도적 근거로써 2011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여기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제시된 주요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과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1) 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년 9월에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에 제시된 고령사회 분야의 정책방향,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기반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 두고 있음.

- 추진방향 및 전략

①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대응

- 다양한 고용기회 및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노후생활 설계 강화

②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건강한 노후생활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 및 여가문화 제공

③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 친화적 주거 및 교통 환경 조성
-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기본방향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확대 및 연령·성차별 등의 해소

- 중·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체계 구축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건강·여가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보건·진료·복지 통합개념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 장수노인의 개인별 관리 및 사회보장적 돌봄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요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에 바탕을 두어 14개의 중점과제와 3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점과제만 제시하기로 함.7)
- 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고령 전문 인력 우선채용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시니어 창업지원
  - ②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 ③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
    - 민관협의회 및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지정 운영
  - ④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7) 35개 세부과제 내용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 보고서 150쪽을 참고할 것.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
- ⑥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제공
  - 중·고령자 전문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 ⑦ 고령 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개선
- ⑧ 노인인권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경로당 ‘경로효친결연’
  - 어린이 효 아카데미 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에 제시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함.
  - 첫째, 고령사회의 다변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 중기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 혹은 고령사회 연구 관련 전문가, 현장 전문가, 행정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고령사회 중기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둘째, 고령사회 중기계획이 2015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2014년에 반드시 그 동안 고령사회 중기계획 실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6-2020」 수립에 반드시 미비점과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야 할 것임.

- 셋째, 고령사회 중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재정 부담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복지재정 현황과 전망분석에 바탕을 두어 고령사회 대책 수립을 제대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 제주지역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세 이상 노인을 보호·지원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지급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음.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명칭으로 되 있음(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89호).
-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80세 이상 노인을 ‘장수노인’ 그리고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을 ‘100세 이상 노인’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 장수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수노인 복지 시책을 개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0세 이상

- 노인이 종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축하기념품 또는 이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제시된 지원이 현실적으로 장수노인이나 100세 이상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장수노인(만 80세 이상)에게 장수수당이 매달 2만5천원이 지원되고, 또한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

####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연계되어 있지만 순수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지원정책도 포함되어 있음(표 4-2. 참고).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등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임.
-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도비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 사업들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사업과 연계되어 지방비가 매칭된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과 80세 이상 노인대상 장수수당



<표 4-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추진 노인복지정책사업 현황

구분		기준(대상)	지원내용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판정자 (전국 월 평균가구소득 1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바우처)</li> <li>- 가사서비스 등</li> </ul>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 노인 중(독거노인)</li> <li>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돌보미) 지원</li> <li>70세 이상 노인 공영버스 무료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안전 확인 방문 등</li> <li>- 교통비 및 전화료 1인당 월 20만원 지원</li> </ul>
예방 건강관리 분야	치매조기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노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치매선별검사(무료) 후, 치매거점 병원 치매진단검사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li> </ul>
	치매치료 진료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노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 진료비 등월 3만원 지원</li> </ul>
연금 및 보험지원 관련 분야	기초노령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노인단독 830천원, 노인부부 1,328천원 이하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노령연금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li> <li>- 노인단독가구 (20,000~94,600원)</li> <li>- 노인부부가구 (40,000~151,400원)</li> </ul>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 1~2등급 (도서지역 3등급까지) 시설입소자</li> <li>차상위계층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비급여분제외)의 50%</li> </ul>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li> <li>차상위계층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료 지원</li> </ul>
고용지원 분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li> <li>- 1인 고용시 월 200천원(1업체당 5인 범위 내)</li> </ul>
	노인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거주 65개 이상 노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3시간 주 3일 노동에 매월 200천원</li> </ul>
복지서비스 분야	무주택어르신 주거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 이상 무주택독거노인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무주택노인주거비 지원</li> <li>- 임대료 별 차등지원 (400천원 ~ 700천원)</li> </ul>

&lt;표 4-2. 계속&gt;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추진 노인복지정책사업 현황

구분	기준(대상)	지원내용
저소득 어르신 목욕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저소득노인 목욕료 지원 - 1인/월 6,000원(연 72,000원)
저소득노인 이·미용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저소득노인 미·이용료 지원 - 1인/월 5,000원 (연 60,000원)
저소득노인 진료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1인당 월 150천원 (총예산 14백만원)
저소득노인 주거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 가형주택 400,000원 • 나형주택 600,000원 • 다형주택 700,000원
저소득노인 틀니	• 저소득노인 지원	• 저소득노인 개인별 250천원 까지 지원
저소득노인 보청기	• 저소득노인 지원	• 저소득노인 개인별 340천 까지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 693명	• 1식 3,500원/1인(7억원)
간병비 지원	• 시설입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 시설입소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 1인당 600천원 - 병원 입원시 유료 간병비 지원(간병인)
물리치료사 인건비	• 양로원 입소 노인 대상 (양로시설 물리치료사에게 지원)	• 1인당 월 1,800천원
노인위생 재료비	• 양로원 입소 노인	• 양로시설 입소노인 정원의 30% 기준(연간 36백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케이블TV, 시청료, 간식비 등 경로당 지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014.

지급 사업이 이에 해당됨.

-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에 의해 노후생활보장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수노인의 경제적 생활유지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음. 만 80세 이상의 장수노인이면 월 2만5천원을 받을 수 있음.
- 장수수당 지급은 장수노인들의 용돈 정도를 충당하는데도 미흡한 예산 지원 규모이어서 향후 예산 증액을 통해 장수노인들이 용돈 쓰기에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도 노인층의 급격한 증가와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혹은 고용연장 욕구증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불충분함. 물론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노인취업과 경제적 자립 생활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지만 지원 대상 기업을 확충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인의 든든한 노후소득 창출을 통해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 사업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노인층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음.
- 제주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사업들은 주로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1)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노인 현황

- 제주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노인들은 지난 5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표 4-3. 참고). 2010년에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노인이 6,629명이었으나 2014년 5월 현재 기준으로 6,104명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6,104명(남 1,652명, 여 4,452명)이고 도내 전체 수급자(20,756명, 남 8,915명, 여 11,841명) 가운데 29.4%를 차지하고 있음.

<표 4-3>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노인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월.
노인 수	6,629명	6,416명	6,249명	6,143명	6,104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내부자료」 2014. 5.

- 따라서 노인인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고령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층의 탈수급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노인층의 탈수급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요구됨.

### 2)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 제주지역의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로 하여금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8)

○ <표 4-4>가 보여주듯이 제주지역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 4년여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율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율이 62.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수급율 69.4%보다 6.9% 낮게 나타남.

<표 4-4> 제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지원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12월 말	비 고
인 원(명)	45,807	47,080	48,594	49,600	
지원액(백만원)	44,965	46,787	49,797	52,985	
수급률(%)	65.9	64.7	64.0	62.5	노인인구 대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내부자료」 2014. 5.

○ 이처럼 제주지역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제주지역 노인들의 노후소득 증가로 인한 것인지, 혹은 제주노인들이 경제적 활동(노동/일) 참여를 통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인이 증가한 결과인지 보다 세밀한 연구 분석이 요구됨.

8) 기초노령연금 수급하는데 중요한 선정기준을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월소득인정액 단독노인인 경우 87만 원 이하, 부부노인은 139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됨. 제주지역의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예산 지원(2014년도 91,717백만원)은 국비 64,199백만원과 지방비 27,518백만원이 합쳐 지원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지방비에 의한 부담 비중이 42.9%를 차지하고 있음.

### 3)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 제주지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2008. 10. 8. 전부개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
-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사람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와 등록장애인 세대 가운데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가 지원사업 대상자임.

<표 4-5>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월 말
월 평균세대	3,624	4,446	4,528	4,539	4,585	4,826	4,998
연간지원세대	25,365	53,352	54,333	54,473	55,016	48,266	59,970
지원액 (백만원)	121	262	248	265	301	313	30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014. 5.

- 지난 7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은 세대는 2007년에 25,365세대에서 2013년 59,970세대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리고 전적으로 도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2007년에 121백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301백만원으로 늘어나 약 149%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표 4-5. 참고).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급 대상 세대의 증가는 그 만큼 제주지역의 차상위계층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음.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감소는 결국 차상위계층의 증가와 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노인빈곤 정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됨.

- 고령사회에서 노후준비가 잘 안된 현재 노인세대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 잘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에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 4)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유형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은 9개월 동안 지속되며 소득은 월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201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총예산은 8,826백만원으로 책정됨.<sup>9)</sup>
  - 보건복지부에 의한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1년에 최우수기관, 그리고 2013년에는 대상수상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9)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6,088백만원이었으나 2,738백만원이 늘어나 본예산의 44.9%가 증액되었음. 특히 2015년부터는 공공분야 일자리에 월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2016년부터는 월 30만원이 지급되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임(보건복지부, 2014).

&lt;표 4-6&gt;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 집행액				일자리 제공실적	
	계	국비	지방비	전년대비 증가(율)	일자리 수	전년대비 증가(율)
2013	6,931	3,416	3,515	2,265(48%)	3,939	740명(23%)
2012	4,666	2,333	2,333	778(20%)	3,199	522명(19%)
2011	3,888	1,944	1,944	874(28%)	2,677	613명(29%)
2010	3,014	1,507	1,507	-	2,06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014. 5.

주 : 추가경정예산 포함한 실적임

-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이 2010년에 3,014 백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6,931백만원으로 늘어남.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액이 3,917백만원이 증가하여 거의 130%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난 4년동안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이 71.4%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표 4-6. 참고).
-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이 2010년에 3,014 백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6,931백만원으로 늘어남.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액이 3,917백만원이 증가하여 거의 130%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난 4년 동안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이 71.4%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표 4-6. 참고).
- 이와 더불어 노인일자리 사업비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10년에 2,064개, 2011년 2,677개, 2012년 3,199개 그리고 2013년에 3,939개로 증가하였음.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창출 증가율은 90.8%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일자리 증가율은 20.7%p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대비 23%가 증가하였음.



- 노인일자리 및 노인고용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가장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제주지역에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이 <표 4-7>에 볼 수 있듯이, 2007~2013년 사이에 지원업체수, 고용인원수, 지원액수가 모두 증가하였음.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업체 수는 2007년에 32개업체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7년 동안 5배가 증가한 156개 사업체로 늘어났음.

**<표 4-7> 제주지역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업체수 (개수)	32	53	86	95	118	222	156
인 원 (명)	57	94	154	181	216	272	273
지원액 (백만원)	100	194	283	346	418	490	597
증감액(백만원) (전년대비증가율)	-	94 (94%)	89 (45%)	63 (22%)	72 (20%)	72 (17%)	107 (2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014. 5.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의해 고용된 노인수도 2007년에 57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273명으로 늘어나 거의 4.8배가 증가하였음. 그리고 지원액수도 2007년에 100백만원에서 2013년에 59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거의 6배나 늘어났음.
- 2014년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계획을 보면(제주특별자치도, 2014), 156개 업체에 235명의 노인을 고용하고 예산지원액은 566백

만원으로 책정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5) 제주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 제주지역 노인들은 고령자가 되어서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아울러 건강과 여가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사실상, 제주노인들은 독특한 노동문화를 가져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 생활의 안정화와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고승한·황은주, 2010).

<표 4-8> 전국 및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구 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국	15세 이상	62.0	61.5	60.8	61.0	61.1	61.3	61.5
	65세 이상	30.0	30.0	30.1	29.4	29.5	30.7	31.4
제 주	15세 이상	70.0	68.8	67.8	66.0	66.9	67.3	67.1
	65세 이상	48.6	46.0	48.1	44.8	42.0	43.2	45.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그래서 제주노인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음(표. 4-8. 참고). 제주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반면 전국의 경우는 3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처럼 제주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임. 제주에서 농업부문이 전체 산업구조에 거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밭농사(마늘, 당근, 감자, 양파 등) 혹은 과수농사(밀감)에 참여하는데 용이함.
- 이처럼 제주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높은 비율은 높은 고용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4-9. 참고). 제주노인들의 고용율이 거의 45%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의 노인 평균 고용율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래서 제주노인이 전국의 노인들 보다 무려 15%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전국 및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율 변화

구 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국	15세 이상	59.7	59.5	58.6	58.7	59.1	59.4	59.5
	65세 이상	29.8	30.3	29.7	28.7	28.9	30.1	30.9
제 주	15세 이상	68.3	67.9	66.7	64.8	65.8	66.2	65.9
	65세 이상	48.4	46.0	47.8	44.2	41.8	42.9	44.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노인의 노동문화가 결합되어 제주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과수원(혹은 밭)이 있으면 대부분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3.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

-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노인복지정책 지원과 노후생활 안정화와 관련된 주요 지원 정책사업들을 살펴보았음. 사실상,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보다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들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문화, 교육, 여가 등의 다양한 노인복지 분야의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함.
  - 첫째, 노후생활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에 연동되어 추진되고 있음. 즉, 정부 예산지원 하에서 제주지역 노인복지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 둘째,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들은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것이고 여기에 기반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화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기획·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셋째,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노인층(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등)에 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는 실정임. 물론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긴급보호지원제도가 있지만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함.

- 넷째, 현실적으로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 정책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임. 노인을 고용하는 도내 사업체(기업체)가 오직 지방비에 의해서 마련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게 됨. 사실상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만큼 노인일자리창출과 노인고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창출되고 있지만 도내 사업체(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정규직 채용, 임금상승, 승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섯째,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혹은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 자체적으로 다른 노인복지정책(주거복지, 보건의료복지, 여가복지, 교육복지, 가족복지 등)과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음. 다시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노인복지 기본방향과 전략이 보편적 복지체계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노인복지정책을 잘 추진한다고 하여도 다른 분야가 미흡할 경우에 노후생활의 안정화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예컨대, 노인이 심각한 질환에 걸리어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시행되는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타 부서(복지청소년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친환경농정과 등)와 유기적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러한 각 담당 부서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들과 관련하여 주어진 담당 사업만 총괄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대상자로 노인들을 고용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와 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서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 일곱째,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지원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거나 예산 지원의 중복성, 유사사업 시행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여덟째,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지원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에 지방비를 매치시켜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앞으로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제주노인의 경제생활 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방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따라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사업 확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예산 증액을 불러오게 되어 지방정부는 추가 재정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제적 생활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공공분야 일자리에 집중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규모 소득액 수급, 단순 임시계약직 위주의 고용,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정년연장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 노후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노동계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 제5장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실태조사와 분석

### 1. 조사의 설계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 경제상태, 경제활동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지역 노인들이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주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주 거주 65세 이상 노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구역에 한정되었음.
- 제주지역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26일~5월 31일 기간에 이루어졌음.

### 2. 노후생활 실태조사 분석 및 해석

#### 가. 조사 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면접조사원이 자료를 수집하였음. 물론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 응답을 할

수 있으면 자기기입식 방법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 면접 조사를 하였음.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1:1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노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표본 선정은 제주지역의 읍·면·동별 전체 노인 인구수와 조사대상 표본 수(300명)의 비율 구성을 고려하여 최종 면접대상 표본수를 정하였음.<sup>10)</sup> 그래서 지역별 최종 조사면접 대상자를 보면, 제주시 동지역 125명, 서귀포시 동지역 47명, 제주시 읍·면지역 73명, 서귀포시 읍·면 지역 55명이 선정되었음.
- 조사면접 대상자는 제주지역 읍·면·동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최종조사 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전반적으로 군락표집과 무작위 표집 그리고 할당표집이 병행하여 사용됨. 우선 43개 읍·면·동 지역 가운데 조사대상 표집군은 읍·면·동 지역은 군락표집하였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각 지역별 표본수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무작위 표집 (random sampling)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었음.
  - 제주시 동(洞)지역에서 최종면접 조사대상자는 118명이고,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73명으로 제주시 전체 지역에서 191명의 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음.
  - 서귀포시 동(洞)지역에서 최종면접 조사대상자는 47명이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58명으로 서귀포시 전체 지역에서 105명의 65세

1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전체 노인인구 수는 79,455명이고, 제주시 52,482명, 서귀포시 26,973명으로 나타남(제주특별자치도, 2013).



이상 노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음.

- 최종 면접조사대상 노인 30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면접거부, 면접과정에서 응답거부, 응답내용의 부실 등의 조사대상자 4명의 사례는 제외되어 최종 통계분석 대상자는 296명임.
- 최종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조사대상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생활만족도, 생활의 어려움 및 불편한 점), 경제상태(생활수준, 생활비, 용돈부담, 수입원, 자산 및 부채상황 등), 경제활동(수입, 직업, 일자리, 노동참여 의향, 취업에 어려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취업 활성화) 등의 변인들이 포함되었음.

## 나. 빈도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 296명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일반적 특성은 <표 5-1>에 제시되어 있음.
-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역 별로는 제주시 동(洞)지역 118명 (39.9%), 서귀포시 동(洞)지역 47명(15.9%), 제주시 읍·면지역 73명 (24.7%), 서귀포시 읍·면지역 58명(19.6%)로 나타남.

&lt;표 5-1&gt;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거주지역	제주시 동(洞)지역	118	39.9
	서귀포시 동(洞)지역	47	15.9
	제주시 읍·면지역	73	24.7
	서귀포시 읍·면지역	58	19.6
	계	296	100.0
은퇴 전 직업	농·축·수산업	112	37.8
	자영업(숙박, 음식 등)	34	11.5
	전문직(회계, 의료 등)	17	5.7
	경영·관리직	5	1.7
	기술생산직	11	3.7
	판매서비스업	16	5.4
	일용단순직	40	13.5
	공무원	28	9.5
	전업주부	29	9.8
	기타	4	1.4
	계	296	100.0
	현재 주된 수입원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123
부동산(땅, 집, 상가 등) 임대료		14	4.7
증권·저축 등의 이익배당		5	1.7
자녀 등의 보조		50	16.9
퇴직금 및 실업급여		2	0.7
개인연금(보험회사)		8	2.7
연금(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64	21.6
공적부조(기초생활, 기초노령연금 등)		30	10.1
계		296	100.0

<표 5-1. 계속>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월 평균 수입	30만원 미만	64	21.6
	30~49만원 이하	47	15.9
	50~99만원 이하	50	16.9
	100~149만원 이하	44	14.9
	150~199만원 이하	37	12.5
	200~249만원 미만	26	8.8
	250~299만원 이하	7	2.4
	300~349만원 이하	12	4.1
	350~399만원 이하	5	1.7
	400만원 이상	4	1.4
	계	296	100.0
현재 경제생활	매우 어렵다	27	9.1
	대체로 어렵다	76	25.7
	그저 그렇다	138	46.6
	대체로 좋은 편이다	53	17.9
	매우 좋은 편이다	2	0.7
	계	296	100.0
현재 거주 형태	본인(배우자) 소유의 집	173	58.4
	자녀 소유의 집	48	16.2
	전세집	20	6.8
	월세집	52	17.6
	기타	3	1.0
	계	296	100.0
주요 지출 항목	본인(배우자) 생활비	170	57.4
	경조사 및 친목회비	21	7.1
	약값 및 의료비	86	29.1
	손자녀 용돈	6	2.0
	집세	8	2.7
	기타	5	1.7
	계	296	100.0
현재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10	3.4
	대체로 나쁘다	126	42.6
	보통이다	99	33.4
	대체로 좋다	49	16.6
	매우 좋다	12	4.1
	계	296	100.0

&lt;표 5-1. 계속&gt;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력	무학	34	11.5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66	22.3
	중졸(중퇴 포함)	53	17.9
	고졸(중퇴 포함)	98	33.1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12	4.1
	4년제 대학 졸업(중퇴 포함)	29	9.8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4	1.4
	계	296	100.0
결혼상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174	58.8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다	102	34.5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11	3.7
	이혼한 상태이다	7	2.4
	평생 혼자 살고 있다	2	0.7
	계	296	100.0
성별	남성	124	41.9
	여성	172	58.1
	계	296	100.0
연령	65세 ~ 69세	126	42.6
	70세 ~ 74세	88	29.7
	75세 ~ 79세	61	20.6
	80세 ~ 84세	11	3.7
	85세 이상	10	3.4
	계	296	100.0

○ 조사대상자의 은퇴 전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 112명(37.8%), 일용단순직 40명(13.5%), 자영업(숙박, 음식 등) 34명(11.5%), 전업주부 29명(9.8%), 공무원 28명(9.5%), 전문직(회계, 의료 등) 17명(5.7%), 판매서비스업 16명(5.4%), 기술 생산직 11명(3.7%), 경영·관리직 5명(1.7%), 기타 4명(1.4%)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수·축산업, 자영업(숙박, 음식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된 수입원별 분포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경우가 123명(41.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금(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64명(21.6%), 자녀 등의 보조 50명(16.9%), 공적부조(기초생활, 기초노령연금 등) 30명(10.1%), 부동산(땅, 집, 상가 등) 임대료 14명(4.7%), 개인연금(보험회사) 8명(2.7%), 증권·저축 등의 이익배당 5명(1.7%), 퇴직금 및 실업급여 2명(0.7%)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현재 월평균 수입은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64명(21.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99만원 이하 50명(16.9%), 30~49만원 이하 47명(15.9%), 100~149만원 이하 44명(14.9%), 150~199만원 이하 37명(12.5%), 200~249만원 미만 26명(8.8%), 300~349만원 이하 12명(4.1%), 250~299만원 이하 7명(2.4%), 350~399만원 이하 5명(1.7%), 400만원 이상 4명(1.4%)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의 월 평균 수입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4.4%(161명)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현재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가 138명(46.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체로 어렵다’ 76명(25.7%), ‘대체로 좋은 편이다’ 53명(17.9%), ‘매우 어렵다’ 27명(9.1%), ‘매우 좋은 편이다’ 2명(0.7%)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1/3 이상(34.8%, 103명)이나 경제적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음.
-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 형태별 분포를 보면, 본인(배우자) 소유의

집인 경우가 173명(58.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월세집 52명(17.6%), 자녀 소유의 집 48명(16.2%), 전세집 20명(6.8%), 기타 3명(1.0%)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다수 조사응답 노인들은 자기 집 혹은 자녀 집에 거의 거주하고 있지만(74.6%), 월세집 혹은 전세집에 사는 경우도 24.4%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자가 현재 가장 많은 지출 비용 항목을 보면, 본인(배우자) 생활비가 170명(57.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값 및 의료비 86명(29.1%), 경조사 및 친목회비 21명(7.1%), 집세 8명(2.7%), 손자녀 용돈 6명(2.0%), 기타 5명(1.7%)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생활비, 그리고 약값 및 의료비가 조사응답 노인들의 대다수 지출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음(86.5%).
- 조사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 정도에 인식 분포를 보면, ‘대체로 나쁘다’는 응답자가 126명(42.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99명(33.4%), ‘대체로 좋다’ 49명(16.6%), ‘매우 좋다’ 12명(4.1%), ‘매우 나쁘다’ 10명(3.4%)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136명(46.0%)이나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을 보였음.
-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 부문은 고졸(중퇴 포함) 98명(33.1%),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66명(22.3%), 중졸(중퇴 포함) 53명(17.9%), 무학 34명(11.5%), 4년제 대학 졸업(중퇴 포함) 29명(9.8%),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12명(4.1%),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4명(1.4%)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1/3 이상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15.3%(45명)이고,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도 33.8%(100명)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자가 174명(58.8%)으로 가장 많고,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다’ 102명(34.5%),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11명(3.7%), ‘이혼한 상태이다’ 7명(2.4%), ‘평생 혼자 살고 있다’ 2명(0.7%)순으로 나타남.
  - 특히 사별하여 혼자 사는 조사응답 노인들이 1/3이상이나 되고 있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172명(58.1%), 남성 124명(41.9%)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65세~69세 사이 응답 노인들이 126명(42.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0세~74세 88명(29.7%), 75세~79세 61명(20.6%), 80세~84세 11명(3.7%), 84세 이상 10명(3.4%)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70대 노인들이 절반(50.3%, 149명)를 차지하고 있음.

## 2) 일상생활 상태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분포를 보면(표 5-2. 참고),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인 노인은 134명(45.3%)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만족감을 인식하고 있고, 반면에 54명(18.2%)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음.

&lt;표 5-2&gt; 현재 생활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아주 불만족하다	8	2.7
대체로 불만족하다	46	15.5
그저 그렇다	108	36.5
대체로 만족하다	122	41.2
아주 만족하다	12	4.1
합계	296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들 가운데 1순위로는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102명(34.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외출 못하는 일’ 40명(13.7%), ‘식사를 챙겨 먹는 일’ 39명(13.3%), ‘자식과 함께 사는 일’ 17명(5.8%), ‘말을 잘 못 듣는 일’ 15명(5.1%), ‘화장실 출입하는 일’ 5명(1.7%)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다른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기타 사항에 응답한 경우가 75명(25.6%)으로 나타남(표 5-3. 참고).

&lt;표 5-3&gt; 현재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자식과 함께 사는 일	17	5.8	13	5.6
식사를 챙겨 먹는 일	39	13.3	37	16.0
교통이 불편하여 외출 못하는 일	40	13.7	56	24.2
화장실 출입하는 일	5	1.7	16	6.9
말을 잘 못 듣는 일	15	5.1	36	15.6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	102	34.8	49	21.2
기타	75	25.6	24	10.4
합계	293	100.0	231	100.0



- 2순위 응답 분포를 보면, ‘교통이 불편하여 외출 못하는 일’이 56명(2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 49명(21.2%), ‘식사를 챙겨 먹는 일’ 37명(16.0%), ‘말을 잘 못 듣는 일’ 36명(15.6%), 기타 24명(10.4%), ‘화장실 출입하는 일’ 16명(6.9%), ‘자식과 함께 사는 일’ 13명(5.6%)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다른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기타 사항에 응답한 경우가 24명(10.4%)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들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대개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점, 교통이 불편하여 외출하지 못하는 일과 식사를 잘 챙겨드시지 못하는 일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 회복, 편리한 이동, 그리고 식사 챙겨 먹기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 1순위 분포를 보면(표 5-4. 참고),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응답 노인이 106명(36.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점’ 43명(14.7%), ‘특별히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일’ 37명(12.6%),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일’ 26명(8.9%), ‘용돈이 모자란 점’ 24명(8.2%),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일’ 19명(6.5%), ‘일자리를 구하는 일’ 12명(4.1%),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는 일’ 9명(3.1%), 그리고 ‘자녀들과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 8명(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분포를 보면,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응답자가 60명(21.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별히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일’ 46명(16.1%), ‘생활비가 부족한 점’ 36명(12.6%),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일’ 32명(11.2%), ‘용돈이 모자란 점’ 32명(11.2%), ‘일자리를 구하는 일’ 25명(8.7%),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는 일’ 22명

(7.7%),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일’ 15명(5.2%), 그리고 ‘자녀들과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 9명(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4> 현재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생활비가 부족한 점	43	14.7	36	12.6
용돈이 모자란 점	24	8.2	32	11.2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일	26	8.9	15	5.2
일자리를 구하는 일	12	4.1	25	8.7
특별히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일	37	12.6	46	16.1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는 일	9	3.1	22	7.7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	106	36.2	60	21.0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일	19	6.5	32	11.2
자녀들과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	8	2.7	9	3.1
기타	9	3.1	9	3.1
합계	293	100.0	286	100.0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이 현재 가장 어려워 하는 점은 대개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특별히 할 일없이 집에서 지내는 일 등으로 나타남.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 경제적 생활 그리고 여가생활의 질적 변화를 위한 사회정책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 분포를 보면(표 5-5. 참고), ‘아픈 몸을 치료하는 일’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81명(27.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비와 용돈이 더 필요하다’ 78명(26.4%), ‘남는 시간을 잘 보내는 일’ 58명(19.6%), ‘말벗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19명(6.4%),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일’ 14명(4.7%),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일’ 12명(4.1%), ‘일자리를 구하는 일’ 12명(4.1%), ‘바깥 출입을 잘하는 일’ 12명(4.1%), ‘사는 집을

고치는 일' 6명(2.0%), 그리고 기타 4명(1.4%) 순으로 나타남.

<표 5-5> 현재 생활 중 가장 필요한 점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생활비와 용돈이 더 필요하다	78	26.4	32	11.0
사는 집을 고치는 일	6	2.0	9	3.1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일	12	4.1	10	3.4
일자리를 구하는 일	12	4.1	19	6.6
남는 시간을 잘 보내는 일	58	19.6	51	17.6
아픈 몸을 치료하는 일	81	27.4	76	26.2
바깥출입을 잘하는 일	12	4.1	34	11.7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일	14	4.7	24	8.3
말벗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19	6.4	29	10.0
기타	4	1.4	6	2.1
합계	296	100.0	290	100.0

- 가장 필요로 하는 2순위 분포를 보면, ‘아픈 몸을 치료하는 일’이라는 응답 노인이 76명(26.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는 시간을 잘 보내는 일’ 51명(17.6%), ‘바깥출입을 잘 하는 일’ 34명(11.7%), ‘생활비와 용돈이 더 필요하다’ 32명(11.0%), ‘말벗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29명(10.0%),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일’ 24명(8.3%), ‘일자리를 구하는 일’ 19명(6.6%),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일’ 10명(3.4%), ‘사는 집을 고치는 일’ 9명(3.1%), 그리고 기타 6명(2.1%)순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들이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주로 아픈 몸을 치료하고, 생활비와 용돈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잘 보내는 일을 들고 있음. 따라서 현재 생활에서 가장 필

요로 하는 점도 가장 어려운 점과 유사한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래서 노인들의 보건의료, 소득보장, 그리고 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노인복지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3) 경제생활 상태

-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생활수준 정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표 5-6. 참고),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82명(28.0%)으로 가장 많고, 반면에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노인은 38명(12.9%)으로 나타남. 그리고 응답 노인들은 현재의 생활수준 정도가 ‘그저 그렇다’는 인식이 절반 이상(59.0%)을 보여주고 있음.

<표 5-6> 현재 생활수준 정도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낮다	14	4.8
낮은 편이다	68	23.2
그저 그렇다	173	59.0
높은 편이다	35	11.9
매우 높다	3	1.0
합계	293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5-7. 참고), ‘본인 스스로’로 부담하는 응답자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부 (각종 연금)’ 67명(22.8%), ‘배우자’ 48명(16.3%), ‘따로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29명(9.9%), ‘함께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28명

(9.5%), 그리고 기타 1명(0.3%)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가에 의한 공적 연금에 의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는 1/4 수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이 개인적 차원(본인, 배우자, 손자녀 등)에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7> 현재 생활비 부담자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 스스로	121	41.2
배우자	48	16.3
함께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28	9.5
따로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29	9.9
정부 (각종 연금)	67	22.8
기타	1	0.3
합계	294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용돈 부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5-8. 참고), ‘본인 스스로’로 부담하는 응답 노인이 135명(45.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부(각종 연금)’ 54명(18.4%), ‘따로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48명(16.3%), ‘배우자’ 33명(11.2%), ‘함께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20명(6.8%), 기타 3명(1.0%),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1명(0.3%)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의 용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대개 본인 스스로, 배우자, 가족 성원이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적 연금을 용돈으로 쓰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노인들 스스로 용돈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여 직접 소득창출에 참여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lt;표 5-8&gt; 현재 용돈 부담자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 스스로	135	45.9
배우자	33	11.2
함께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20	6.8
따로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48	16.3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1	0.3
정부 (각종 연금)	54	18.4
기타	3	1.0
합계	294	100.0

-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호자는 49명(18.1%)이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35명(12.9%)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당연히 받고 있으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주지역에서 해녀, 보훈가족(한국전과 월남전 참전군인), 4·3 피해부상자, 장애등록 노인 등에 여기에 속함.
-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현재 등록장애인 여부에 대한 분포를 보면(표 5-9. 참고), 등록 장애인이 23명(7.9%)이고, 현재 신청 중인 응답 노인은 2명(0.7%) 그리고 나머지 267명(91.4%)은 등록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lt;표 5-9&gt; 등록 장애인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3	7.9
아니오	267	91.4
현재 신청 중	2	0.7
합계	292	100.0

- <표 5-10>은 조사응답 노인 본인이 2013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유무와 소득액수를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세후)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이 있다’가 99명(57.9%), 반면에 ‘근로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72명(42.2%)로 나타났음. 근로소득(세후) 액수는 500만원 미만 59명(59.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1명(11.1%),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명(10.1%), 2,000만원 이상 10명(10.1%),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9명(9.1%)순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없는 응답 노인도 42.2%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액은 대체로 500만원 미만으로 거의 60%에 이르고 있음.
- 조사응답 노인들의 작년 한해 사업소득(세후)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사업소득이 있다’가 26명(21.5%), 반면에 ‘사업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95명(78.5%)로 나타났음. 사업소득(세후) 액수 분포를 보면, 2,000만원 이상이 16명(61.5%)으로 가장 많고,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3명(11.5%),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명(11.5%),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명(7.7%), 500만원 미만 2명(7.7%)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은 사람은 26명(21.5%)에 불과함. 그렇지만 사업소득액은 2,000만원 이상이 61.5%(16명)를 차지하고 있음.

&lt;표 5-10&gt; 조사대상 노인의 2013년도 연간 소득 분포

구분	본인의 연 소득						
	수입 유무	빈도 (명)	비율 (%)	액수(원)	빈도 (명)	비율 (%)	
근로소득 (세후)	있다	99	57.9	500만원 미만	59	59.6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	10.1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1	11.1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9	9.1	
				2,000만원 이상	10	10.1	
				합계	99	100.0	
	없다	72	42.1	-	-	-	
합계	171	100.0	-	-	-		
사업소득 (세후)	있다	26	21.5	500만원 미만	2	7.7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	7.7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	11.5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3	11.5	
				2,000만원 이상	16	61.5	
				합계	26	100.0	
	없다	95	78.5	-	-	-	
합계	121	100.0	-	-	-		
재산소득 (세후)	있다	34	29.1	500만원 미만	11	32.4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	29.4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	8.8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	2.9	
				2,000만원 이상	9	26.5	
				합계	34	100.0	
	없다	83	70.9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	8.8	
합계	117	100.0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	2.9		
사적 이전소득 (세후)	있다	62	48.4	250만원 미만	28	45.2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9	30.6	
				500만원 이상	15	24.2	
				합계	62	100.0	
	없다	66	51.6	-	-	-	
합계	128	100.0	-	-	-		
공적 이전 소득	공적 연금	있다	55	38.2	250만원 미만	20	36.4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8	32.7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5	9.1
					7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	7.3
					1,000만원 이상	8	14.5
					합계	55	100.0
없다	89	61.8	-	-	-		
합계	144	100.0	-	-	-		



<표 5-10. 계속> 조사대상 노인의 2013년도 연간 소득 분포

구분		본인의 연 소득					
		수입 유무	빈도 (명)	비율 (%)	액수(원)	빈도 (명)	비율 (%)
소득	기타 공적 연금	있다	13	12.1	250만원 미만	7	53.8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	15.4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2	15.4
					1,000만원 이상	2	15.4
					합계	13	100.0
		없다	94	87.9	-	-	-
합계	107	100.0	-	-	-		
공적이 전소득	기초 노령 연금	있다	58	44.6	50만원 미만	2	3.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9	15.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41	70.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	5.2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3	5.2
		합계	58	100.0			
	없다	72	55.4	-	-	-	
	합계	130	100.0	-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연금	있다	36	30.3	50만원 미만	1	2.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9	25.0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1	30.6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5	41.7
		합계	36	100.0			
	없다	83	69.7	-	-	-	
합계	119	100.0	-	-	-		
기타 수입	개인 연금	있다	7	6.9	100만원 미만	1	14.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	14.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	28.6
					400만원 이상	3	42.9
					합계	7	100.0
		없다	94	93.1	-	-	-
	합계	101	100.0	-	-	-	
	퇴직 연금	있다	21	19.4	1,000만원 미만	2	9.5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3	14.3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0	47.6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5	23.8
					4,000만원 이상	1	4.8
		합계	21	100.0			
	없다	87	80.6	-	-	-	
합계	108	100.0	-	-	-		
주택 연금, 농지 연금	있다	5	5.0	100만원 미만	2	4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	20	
				400만원 이상	2	40	
				합계	5	100.0	
	없다	95	95.0	-	-	-	
합계	100	100.0	-	-	-		

&lt;표 5-10. 계속&gt; 조사대상 노인의 2013년도 연간 소득 분포

구분	본인의 연 소득					
	수입 유무	빈도 (명)	비율 (%)	액수(원)	빈도 (명)	비율 (%)
기타소득	있다	13	22.8	250만원 미만	7	53.8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	7.7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2	15.4
				7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	7.7
				1,000만원 이상	2	15.4
				합계	13	100.0
	없다	44	77.2	-	-	-
합계	57	100.0	-	-	-	
구 분	본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액수(원)	빈도 (명)	비율 (%)			
총수입액(본인)	500만원 미만	76	34.1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6	20.6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25	11.2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9	8.5			
	2,000만원 이상	57	25.6			
	합계	223	100.0			
총수입액(본인+배우자)	1,000만원 미만	113	45.7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51	20.6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3	13.4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23	9.3			
	4,000만원 이상	27	10.9			
	합계	247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의 작년 한해 재산소득(세후)의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재산소득이 있다’가 34명(29.1%), 반면에 ‘재산소득이 없다’가 83명(70.9%)으로 나타남. 재산소득이 있었던 노인들의 재산소득 수입액은 500만원 미만 11명(32.4%),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명(29.4%), 2,000만원 이상 9명(26.5%),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명(8.8%),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명(2.9%)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다수 응답 노인들에게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가 거의 29.1%(34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61.8%, 21명)이나 1,000만원 미만의 재산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작년 한해 사적 이전소득(세후) 유무에 대한 분포를 보면, ‘이전소득이 있다’가 62명(48.4%), 반면에 ‘이전소득이 없다’가 66명(51.6%)로 나타났음. 이전소득액은 250만원 미만이 28명(4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9명(30.6%),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0명(16.1%), 1,000만원 이상 4명(6.5%), 7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명(1.6%)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이 작년에 이전소득으로 벌어들인 경우는 48.2%(62명)를 차지하고, 이들의 이전소득 액수를 보면 500만원 미만이 거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응답 노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얻은 공적이전 소득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소득이 있다’는 노인이 55명(38.2%), 반면에 ‘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89명(61.8%)로 나타남. 공적연금으로부터 얻은 소득액 분포를 보면, 250만원 미만이 20명(3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8명(32.7%), 1,000이만원 이상 8명(14.5%),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5명(9.1%), 7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명(7.3%)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받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공적연금액이 500만원 미만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 달 평균 거의 50만원 미만 수준임. 그래서 공적연금을 받아 경제적 생활을 해 나가기 쉽지는 않은 상태임.

- 조사응답 노인들이 작년 한해 공적이전 소득 가운데 기타 공적연금(보훈연금,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으로부터 ‘소득이 있다’는 경우가 13명(12.1%), 반면에 ‘소득이 없다’는 응답자가 94명(87.9%)로 나타남. 응답 노인들이 받은 수입액 가운데 250만원 미만인 7명(5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명(15.4%),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2명(15.4%), 1,000만원 이상 2명(15.4%)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은 작년에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가 12.1%(13명)을 차지하여 대다수 노인들이 국민연금 등 이외의 다른 공적연금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들의 작년 한해 공적이전 소득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으로 얻은 수입 유무를 보면, ‘소득이 있다’는 응답자는 58명(44.6%), ‘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72명(55.4%)로 나타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초노령연금으로부터 얻은 수입액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41명(70.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9명(15.5%),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명(5.2%),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3명(5.2%), 50만원 미만 2명(3.4%)순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액수도 절대 대다수(89.6%, 52명)가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이 작년 한 해 공적이전 소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연금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금소득이 있다’는 응답자가 36명(30.3%), 반면에 ‘연금소득이 없다’는 경우가 83명(69.7%)로 나타

남. 또한 응답 노인들이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연금 소득액을 보면, 수입액은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5명(41.7%),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1명(30.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9명(25.0%), 50만원 미만 1명(2.8%)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거의 1/3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나타났고, 아울러 이들 노인들이 받는 기초생활보장 연금의 연간 수입액이 150만원 미만이 58.4%(21명)을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의 작년 한해 기타 수입 가운데 개인연금 수입 유무에 대하여 ‘연금소득이 있다’는 응답자는 7명(6.9%), 반면에 ‘연금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94명(93.1%)로 나타남. 개인연금 수입액 분포를 보면, 400만원 이상 수입액이 3명(42.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명(28.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명(14.3%), 100만원 미만 1명(14.3%)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은 개인연금으로부터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들의 작년 한해 기타 수입 중 퇴직연금 수입 유무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이 있다’는 응답자는 21명(19.4%), 반면에 ‘연금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87명(80.6%)으로 나타남. 퇴직연금 수입액 분포를 보면,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0명(47.6%),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5명(23.8%),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3명(14.3%), 1,000만원 미만 2명(9.5%), 4,000만원 이상 1명(4.8%)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는 조사대상 노인들은 19.4%(21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받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얻는 소득액이 2,000만원~4,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명(71.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의 작년 한해 기타수입 중 주택연금 혹은 농지연금 수입 유무와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95명(95%)이고, 그러한 연금을 받는 경우는 5명(5.0%)에 불과함. 주택연금 혹은 농지연금으로 받는 수입액은 100만원 미만 2명(4%), 400만원 이상 2명(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명(20%)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응답자 본인의 작년 한해 총 수입액 분포를 보면, 500만원 미만이 76명(34.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0만원 이상 57명(25.6%),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6명(20.6%),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25명(11.2%), 그리고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9명(8.5%)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작년 한해 1,000만원 미만의 총소득액을 가진 조사대상 노인 본인들의 경우가 54.7%(122명)이고, 반면에 1,000만원 이상 총소득액인 경우는 45.3%(101명)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작년 한해 총수입액의 분포를 보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3명(4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541명(20.6%),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3명(13.4%), 4,000만원 이상 27명(10.9%), 3,000만원 이상~ 4,0000만원 미만 23명(9.3%)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작년 한해 2,000만원 미만의 총소득액을 가진 조사대상 노인 본인과 배우자인 경우가 66.3%(164명)이고, 반면에 2,000만원 이상의 총소득액을 가진 조사대상 노인(본인+배우자)은 33.7%(83명)으로 나타남.
- <표 5-11>는 조사응답 노인의 배우자가 2013년도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벌어들인 소득액수를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의 작년 한해 근로소득(세후) 수입 유무와 관련하

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자가 46명(46.5%), ‘근로소득이 없다’는 경우가 53명(53.5%)로 나타남. 근로소득(세후) 수입액은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7명(37%), 500만원 미만 9명(19.6%),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8명(17.4%),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6명(13%), 2,000만원 이상 6명(13%)순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53.5%(53명)로 절반 이상을 넘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벌어들인 소득액은 대체로 2,000만원 미만이 87.0%(46명)을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의 작년 한해 사업소득(세후)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사업소득이 있다’는 7명(9.1%), 반면에, ‘근로소득이 없다’는 70명(90.9%)로 나타났음. 사업소득(세후) 액수 분포를 보면, 2,000만원 이상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은 1,500만원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의 배우자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의 작년 한해 재산소득(세후)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재산소득이 있다’는 경우가 14명(17.3%), 반면에 ‘재산소득이 없다’는 응답자가 67명(82.7%)로 나타났으며, 수입액은 500만원 미만 4명(28.6%),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5명(35.7%),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명(14.3%), 2,000만원 이상 2명(14.3%),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명(7.1%)순으로 나타남.

&lt;표 5-11&gt;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2013년도 연간 소득 분포

구분	배우자의 연 수입						
	수입 유무	빈도 (명)	비율 (%)	액수	빈도 (명)	비율 (%)	
근로 소득(세후)	있다	46	46.5	500만원 미만	9	19.6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6	13.0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7	37.0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8	17.4	
				2,000만원 이상	6	13.0	
				합계	46	100.0	
	없다	53	53.5	-	-	-	
합계	99	100.0	-	-	-		
사업소득 (세후)	있다	7	9.1	500만원 미만	1	14.3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	14.3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	14.3	
				2,000만원 이상	4	57.1	
				합계	7	100.0	
	없다	70	90.9	-	-	-	
합계	77	100.0	-	-	-		
재산소득 (세후)	있다	14	17.3	500만원 미만	4	28.6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	14.3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5	35.7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	7.1	
				2,000만원 이상	2	14.3	
	합계	14	100.0				
없다	67	82.7	-	-	-		
합계	81	100.0	-	-	-		
사적 이전소득 (세후)	있다	12	15.8	250만원 미만	6	50.0	
				2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	25.0	
				500만원 이상 ~ 750만원 미만	2	16.7	
				1,000만원 이상	1	8.3	
				합계	12	100.0	
	없다	64	84.2	-	-	-	
합계	76	100.0	-	-	-		
공적 이전 소득	공적 연금	있다	24	27.3	250만원 미만	5	20.8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	41.7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3	12.5
					7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	12.5
					1,000만원 이상	3	12.5
					합계	24	100.0
	없다	64	72.7	-	-	-	
	합계	88	100.0	-	-	-	
	기타 공적 연금	있다	3	4.3	250만원 미만	2	66.7
					1,000만원 이상	1	33.3
					합계	3	100.0
없다		67	95.7	-	-	-	
합계		70	100.0	-	-	-	



<표 5-11. 계속>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2013년도 연간 소득 분포

구분		배우자의 연 수입					
		수입 유무	빈도 (명)	비율 (%)	액수	빈도 (명)	비율 (%)
공적 이전 소득	기초 노령 연금	있다	11	14.9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	63.6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4	36.4
		합계	74	100.0	-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연금	있다	3	4.2	50만원 미만	1	33.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	33.3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	33.3
					합계	3	100.0
		없다	68	95.8	-	-	-
	합계	71	100.0	-	-	-	
	기타 수입	개인 연금	있다	5	7.0	100만원 미만	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	2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	20.0
400만원 이상						2	40.0
합계						5	100.0
퇴직 연금		있다	2	2.8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	50.0
					4,000만원 이상	1	50.0
					합계	2	100.0
					없다	69	97.2
		합계	71	100.0	-	-	
주택 연금, 농지 연금		있다	1	1.4	500만원	1	100.0
					합계	1	100.0
		없다	68	98.6	-	-	
합계	69	100.0	-	-			
기타소득	있다	7	2.4	250만원 미만	3	42.9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	42.9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	14.3	
				합계	7	100.0	
	없다	40	13.5	-	-		
합계	47	15.9	-	-			
총수입액(배우자 본인)				500만원 미만	33	32.7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3	12.9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9	18.8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9	18.8	
				2,000만원 이상	17	16.8	
				합계	101	100.0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에게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가 17.3% (14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82.7%)가 재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의 작년 한해 사적 이전소득(세후) 유무에 대한 분포를 보면, ‘이전소득이 있다’는 12명(15.8%), 반면에 ‘이전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64명(84.2%)으로 나타남. 이전소득액은 250만원 미만 6명(50%),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명(25%),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2명(16.7%), 1,000만원 이상 1명(8.3%)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응답 노인들이 작년에 사적 이전소득으로 벌어들인 경우는 12명(1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소득액도 거의 1,000만원 이하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들의 작년 한해 공적이전 소득 가운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이전소득이 있다’는 노인이 24명(27.3%), 반면 ‘이전소득이 없다’는 경우가 64명(72.7%)로 나타남. 공적연금으로부터 얻은 소득액은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명(41.7%), 250만원 미만 5명(20.8%),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3명(12.5%), 7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명(12.5%), 1,000만원 이상 3명(12.5%)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받는 경우가 27.3%(24명)를 차지하고 있음. 응답자 배우자의 절대 다수가 연간 750만원 미만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의 작년 한해 공적이전 소득 중 기타 공적연금(보훈연금,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

금 등)으로부터 ‘공적연금이 있다’는 응답자는 3명(4.3%), 반면에 ‘공적연금이 없다’는 경우는 67명(95.7%)로 나타남. 또한 기타 공적연금으로 얻은 소득액은 250만원 미만인 2명(66.7%), 1,000만원 이상 1명(33.3%)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의 작년 한해 공적이전 소득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으로부터 얻는 수입 유무를 보면, ‘소득이 있다’는 11명(14.9%), 반면에 ‘소득이 없다’는 경우가 63명(85.1%)로 나타남. 또한 기초노령연금으로부터 얻은 수입액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7명(63.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4명(36.4%)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다수의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85.1%).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의 작년 한해 공적이전 소득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연금으로부터 얻는 수입 유무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이 있다’는 응답자가 3명(4.2%), 반면 ‘연금소득이 없다’는 경우가 68명(95.8%)로 나타남. 또한 응답 노인 배우자가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연금 소득액을 보면, 50만원 미만이 1명(33.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명(33.3%),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명(33.3%)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연금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의 작년 한해 기타 수입 가운데 개인연금 수입 유무에 대하여 ‘연금소득이 있다’는 경우가 5명(7%), ‘연금소득이 없다’는 응답자가 66명(93%)로 나타남. 또한 개인연금으로부터 나

오는 수입액 분포를 보면, 400만원 이상이 2명(40%), 100만원 미만 1명(2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명(2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명(20%)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절대다수의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들은 개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의 작년 한해 기타 수입 가운데 퇴직연금 수입유무에 대한 분포를 보면, ‘퇴직연금 소득이 있다’는 응답자가 2명(2.8%)에 불과하고, ‘퇴직연금 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69명(97.2%)로 나타남. 퇴직연금 수입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명(50%), 4,000만원 이상 1명(50%)순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들이 퇴직연금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의 작년 한해 기타 수입 가운데 주택연금 혹은 농지연금 수입 유무에 관하여, ‘연금소득이 있다’는 응답자는 1명(1.4%), ‘연금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68명(98.6%)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들은 주택연금 혹은 농지연금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들의 작년 한해 총수입액 분포를 보면, 500만원 미만이 33명(3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9명(18.8%),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9명(18.8%), 2,000만원 이상 17명(16.8%),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3명(12.9%)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작년 한해 총수입액 가운데 1,500만원 미만의 총수입액 응답 비율은 64.4%(65명)이고, 1,500만원 이

상 총 수입액 경우는 35.6%(55명)를 차지하고 있음.

- <표 5-12>은 조사응답 노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진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부동산 자산 유무와 관련한 분포를 보면, ‘부동산 소득이 있다’는 응답자가 108명(47.6%), 반면에 ‘부동산 소득이 없다’는 경우가 119명(52.4%)로 나타남. 액수는 2억원 이상 33명(30.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명(23.1%),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22명(20.4%), 5,000만원 미만 18명(16.7%), 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0명(9.3%)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이 거의 절반이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부동산 소득으로 1억원 이상 인 경우가 60.3%(65명)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금융자산 유무에 대한 분포를 보면, ‘금융자산이 있다’는 응답자가 68명(35.2%), 반면에 ‘금융자산이 없다’는 경우가 125명(64.8%)로 나타남. 또한 금융자산 규모액 분포를 보면, 5,000만원 미만 38명(55.9%),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명(29.4%),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5명(7.4%), 2억원 이상 4명(5.9%), 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명(1.5%)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35.2%(68명)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 액수가 1억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85.3%, 58명).

&lt;표 5-12&gt; 현재 조사대상 노인의 자산 및 부채 상황

구분	본인 자산 및 부채				빈도 (명)	비율 (%)
	수입 유무	빈도 (명)	비율 (%)	액수		
부동산 (땅, 집, 건물 등)	있다	108	47.6	5,000만원 미만	18	16.7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	23.1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22	20.4
				1억5천만원 이상~2억 미만	10	9.3
				2억원 이상	33	30.6
				합계	108	100.0
	없다	119	52.4	-	-	
합계	227	100.0	-	-		
금융자산 (주식, 저축 등)	있다	68	35.2	5,000만원 미만	38	55.9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	29.4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5	7.4
				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	1.5
				2억원 이상	4	5.9
				합계	68	100.0
	없다	125	64.8	-	-	
합계	193	100.0	-	-		
부채	있다	48	25.3	2,500만원 미만	28	58.3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1	22.9
				5,0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7	14.6
				7,5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	4.2
				합계	48	100.0
	없다	142	74.7	-	-	
	합계	190	100.0	-	-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부채 유무에 대한 분포를 보면,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가 48명(25.3%), 반면에 ‘부채가 없다’는 경우가 142명(74.7%)로 나타남. 또한 부채 규모액수가 2,500만원 미만이 28명(5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1명(22.9%), 5,0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7명(14.6%), 7,500만원 이상~1억 미만 2명(4.2%)순으로 나타남.

- <표 5-13>은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진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현재 부동산 자산 유무에 대한 분포를 보면, ‘부동산 자산이 있다’는 응답자가 50명(38.5%), ‘부동산 자산이 없다’는 경우가 80명(61.5%)로 나타남. 부동산 규모액은 2억 이상이 15명(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00만원 이상~1억 미만 11명(22%), 1억 이상~1억5천만원 미만 10명(20%), 5,000만원 미만 9명(18%), 1억5천만원 이상~2억 미만 5명(10%)순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 절반 이상(61.5%, 80명)이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규모 액수가 1억 미만인 경우가 40%(20명)을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현재 금융자산 유무에 대해 보면, ‘금융 자산이 있다’는 응답자가 30명(28.6%), ‘금융자산이 없다’는 경우가 75명(71.4%)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 액수는 5,000만원 미만이 18명(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00만원 이상~1억 미만 5명(16.7%), 1억 이상~1억5천만원 미만 5명(16.7%), 2억 이상 2명(6.7%)순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가 현재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30%이고 나머지는 갖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 배우자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가 5,000만원 미만이 60%(18명)를 차지하고 있음.

&lt;표 5-13&gt; 현재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구분	배우자 자산 및 부채				빈도 (명)	비율 (%)
	수입 유무	빈도 (명)	비율 (%)	액수		
부동산 (땅 집 건물 등)	있다	50	38.5	5,000만원 미만	9	18.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1	22.0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10	20.0
				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5	10.0
				2억원 이상	15	30.0
	합계	50	100.0			
	없다	80	61.5	-	-	-
합계	130	100.0	-	-	-	
금융자산 (주식, 저축 등)	있다	30	28.6	5,000만원 미만	18	60.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5	16.7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5	16.7
				2억원 이상	2	6.7
				합계	30	100.0
	없다	75	71.4	-	-	-
합계	105	100.0	-	-	-	
부채	있다	20	19.8	2,500만원 미만	4	20.0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	25.0
				5,0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4	20.0
				7,5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	5.0
				1억원 이상	6	30.0
				합계	20	100.0
	없다	81	80.2	-	-	-
합계	101	100.0	-	-	-	

- 조사대상 노인 배우자의 현재 부채 유무에 대한 분포를 보면, ‘부채가 있다’는 응답가가 20명(19.8%), 반면에 ‘부채가 없다’는 경우는 81명(80.2%)로 나타남. 또한 부채규모 액수는 1억 이상이 6명(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명(25%),



2,500만원 미만 4명(20%), 5,0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4명(20%), 7,500만원 이상~1억 미만 1명(5%)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 배우자의 대다수가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8.2%, 79명), 부채규모도 5,000만원 미만이 45.0%(9명)나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 본인 혹은 배우자가 부채를 지게 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표 5-14. 참고), 생활비 부족이 24명, 사업자금 마련 37명, 주택마련 22명, 의료비 마련 10명, 교육비 마련 8명, 자녀 결혼비 8명으로 나타남.

<표 5-14 > 조사대상 노인 혹은 배우자의 부채 주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생활비 부족	예	24	80.0
	아니오	6	20.0
	합계	30	100.0
사업자금 마련	예	37	90.2
	아니오	4	9.8
	합계	41	100.0
주택마련	예	22	95.7
	아니오	1	4.3
	합계	23	100.0
의료비 마련	예	10	71.4
	아니오	4	28.6
	합계	14	100.0
교육비 마련	예	8	66.7
	아니오	4	33.3
	합계	12	100.0
자녀 결혼비	예	8	66.7
	아니오	4	33.3
	합계	12	100.0
기타	예	3	75.0
	아니오	1	25.0
	합계	4	100.0

## 4) 경제활동 참여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수입이 되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134명(45.3%)이고, 과거에 일을 하였으나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147명(49.7%), 그리고 평생 일을 하지 않은 노인은 15명(5.1%)으로 나타남(표 5-15. 참고). 특히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응답 노인들 대부분이 전업주부로서 평생 생활해 왔을 것임,

&lt;표 5-15&gt; 현재 수입 창출 경제활동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일하고 있다	134	45.3
과거에 일을 하였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47	49.7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15	5.1
합계	296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직업)을 보면(표 5-16. 참고), 농·수·축산업이 43명(3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단순일용직 24명(18%), 판매 및 서비스직 22명(16.5%), 실비 주는 자원봉사 활동 19명(14.3%), 기타 11명(8.3%), 자영업(숙박, 음식 등) 8명(6%), 단순(사무·관리)보조직 3명(2.3%), 경영·관리직 2명(1.5%), 단순기술생산직 1명(0.8%)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는 대개 농·수·축산업과 서비스직, 단순 일용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5-16> 현재 종사하는 직업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농·수·축산업	43	32.3
자영업(숙박, 음식 등)	8	6.0
경영·관리직	2	1.5
단순기술생산직	1	0.8
판매 및 서비스직	22	16.5
단순일용직	24	18.0
단순(사무·관리)보조직	3	2.3
실비 주는 자원봉사활동	19	14.3
기타	11	8.3
합계	133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하는 일(직업)에서 대한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이 49명(36.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17명(12.8%),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3명(9.8%),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3명(9.8%),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명(9%), 70시간 이상~80시간 미만 11명(8.3%),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10명(7.5%), 60시간 이상~70시간 미만 8명(6%) 순으로 나타남(표 5-17. 참고).
- 따라서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지는 조사대상 노인들은 87명으로 65.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lt;표 5-17&gt; 현재 평균 근로시간

구분	빈도(명)	비율(%)
10시간 미만	49	36.8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3	9.8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3	9.8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2	9.0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7	12.8
5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0	7.5
60시간 이상 ~ 70시간 미만	8	6.0
70시간 이상 ~ 80시간 미만	11	8.3
합계	133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일(직업)의 고용상 종사자 지위에 대해 상용근로자가 45명(3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42명(32.3%), 일용근로자 19명(14.6%), 임시근로자 16명(12.3%), 고용주 5명(3.8%), 기타 2명(1.5%), 무급가족종사자 1명(0.8%)순으로 나타남(표 5-18. 참고).

&lt;표 5-18&gt; 현재 고용상 종사자 지위

구분	빈도(명)	비율(%)
자영업자	42	32.3
고용주	5	3.8
무급가족종사자	1	0.8
상용근로자	45	34.6
임시근로자	16	12.3
일용근로자	19	14.6
기타	2	1.5
합계	130	100.0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의 고용상 종사자 지위가 상용근로자들이 많은 이유는 제주지역에서 노인들이 대개 농사일에 종사하여 상용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함.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일하는 이유를 보면(표 5-19. 참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가 74명(55.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돈이 필요해서’ 27명(20.3%),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10명(7.5%), ‘건강유지를 위해서’ 9명(6.8%), ‘시간을 보내기 위해’ 9명(6.8%), ‘능력 발휘를 위해서’ 2명(1.5%),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2명(1.5%)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은 생계비 혹은 용돈 마련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75.9%(101명)로 나타남. 노인들의 경제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표 5-19> 현재 일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74	55.6
용돈이 필요해서	27	20.3
건강유지를 위해서	9	6.8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10	7.5
시간을 보내기 위해	9	6.8
능력 발휘를 위해서	2	1.5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2	1.5
합계	133	100.0

- 조사대상자 노인들이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다’는 응답자는 78명(58.7%)이고, 반면에 11명(8.3%)은 만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임(표 5-20. 참고).

&lt;표 5-20&gt;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한다	3	2.3
만족하는 편이다	75	56.4
그저 그렇다	44	33.1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1	8.3
합계	133	100.0

-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현재 일의 지속 여부와 관련하여 응답자 가운데 109명(83.2%)이 계속 일할 생각이라고 응답하였고, 8명(6.1%)은 다른 일로 바꾸고 싶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그리고 14명(10.7%)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을 보였음(표 5-21. 참고).

&lt;표 5-21&gt; 현재 일에 참여 지속성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계속 일할 생각이다	109	83.2
다른 일로 바꾸고 싶다	8	6.1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14	10.7
합계	131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과거에 가장 오래하였던 일(직업)을 보면(표 5-22. 참고), 농·축·수산업 응답자가 57명(39.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업(숙박, 음식 등) 20명(14%), 단순일용직 18명(12.6%), 기타 14명(9.8%), 전문직(회계, 의료 등) 11명(7.7%), 판매 및 서비스 직 9명(6.3%), 단순기술생산직 6명(4.2%), 단순(사무·관리)보조직 4명

(2.8%), 경영·관리직 4명(2.8%)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이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유형은 농·수·축산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임.

<표 5-22> 과거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농·수·축산업	57	39.9
자영업(숙박, 음식 등)	20	14.0
전문직(회계, 의료 등)	11	7.7
경영·관리직	4	2.8
단순기술생산직	6	4.2
판매 및 서비스직	9	6.3
단순일용직	18	12.6
단순(사무·관리)보조직	4	2.8
기타	14	9.8
합계	143	100.0

○ 조사대상자가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일)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표 5-23. 참고), 자영업자가 53명(38.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용근로자 41명(29.9%), 일용근로자 21명(15.3%), 임시근로자 13명(9.5%), 고용주 4명(2.9%), 기타 3명(2.2%), 무급가족종사자 2명(1.5%)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가장 오래 동안 종사한 일을 할 때 고용상의 종사자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제주지역의 노인들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생산자로 영농활동에 종사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함.

&lt;표 5-23&gt;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고용상 종사자 지위

구분	빈도(명)	비율(%)
자영업자	53	38.7
고용주	4	2.9
무급가족종사자	2	1.5
사용근로자	41	29.9
임시근로자	13	9.5
일용근로자	21	15.3
기타	3	2.2
합계	137	100.0

- 조사대상자들이 직업(일)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표 5-24. 참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78명(5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년퇴직’ 29명(20%), ‘영업이 잘되지 않아서’ 8명(5.5%), ‘근로여건 및 환경이 나빠서’ 6명(4.1%), ‘계약이 끝나서’ 4명(2.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4명(2.8%), ‘여가를 즐기려고’ 4명(2.8%),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2명(1.4%),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2명(1.4%), ‘생활의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2명(1.4%), 기타 2명(1.4%), ‘가사문제(육아, 가사, 간병)’ 1명(0.7%), ‘소득(보수)이 적어서’ 1명(0.7%),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1명(0.7%),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1명(0.7%)순으로 나타남.



<표 5-24> 직업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정년퇴직	29	20.0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2	1.4
계약이 끝나서	4	2.8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2	1.4
영업이 잘되지 않아서	8	5.5
근로여건 및 환경이 나빠서	6	4.1
소득(보수)이 적어서	1	0.7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4	2.8
건강이 좋지 않아서	78	53.8
가사문제(육아, 가사, 간병)	1	0.7
여가를 즐기려고	4	2.8
생활의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2	1.4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1	0.7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1	0.7
기타	2	1.4
합계	145	100.0

- 따라서 일을 그만 둔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53.8%, 78.0%)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임.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하려면 우선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중요함. 그렇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정책과도 연계성을 가져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조사대상자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 및 직업적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노인들도 있음. 따라서 노인들이 일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5-25. 참고), 조사응답자들 가운데 ‘일하고 싶으나 집안일(가족수발 등) 때문에 일을 하

지 않는' 응답자가 6명(54.5%)으로 가장 많고, 반면에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2명(18.2%),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명(9.1%),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반대해서' 1명(9.1%),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1명(9.1%)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본인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배우자가 건강하지 못하여 돌봄제공자 역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녀들이 체면 때문에 노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말리는 경우도 없지 않음.

<표 5-25>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	9.1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2	18.2
일하고 싶으나 집안일(가족수발 등) 때문에	6	54.5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반대해서	1	9.1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1	9.1
합계	11	100.0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169명(58.1%)이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22명(41.9%)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음(표 5-26. 참고).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노인들에 대한 재취업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표 5-26> 향후 취업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69	58.1
아니오	122	41.9
합계	291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5-27. 참고), 먼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75명(44.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돈이 필요해서’ 29명(17.2%), ‘건강유지를 위해서’ 20명(11.8%),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7명(10.1%), 능력(경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15명(8.9%),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12명(7.1%), 기타 1명(0.6%)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이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대개 생계비(생활비)와 용돈 마련(61.6%, 104명), 그리고 건강유지(11.8%, 20명) 때문이라는 인식이 크게 나타남.

<표 5-27>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75	44.4
용돈이 필요해서	29	17.2
건강유지를 위해서	20	11.8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12	7.1
능력(경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15	8.9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7	10.1
기타	1	0.6
합계	169	100.0

- 일자리를 희망하는 조사대상 노인들은 앞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5-28. 참고),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고 싶은’ 응답자가 67명(39.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미생활을 통해 부수입 얻는 일자리(여가형 직종)’ 51명(30%),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직종에 취업’ 26명(15.3%), ‘사회공헌형 일자리(어린이 교육 지도 등)’ 14명(8.2%), ‘창업’ 7명(4.1%), 기타 5명(2.9%)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이 퇴직 이전에 하였거나 혹은 유사한 직종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한 취미생활로 소일하면서 용돈 정도를 벌수 있는 여가형 직종의 일자리를 많이 원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 특히 새로운 직종의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응답자(15.3%)들을 대상으로 직업재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임.

<표 5-28> 희망 직종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	67	39.4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직종에 취업	26	15.3
창업	7	4.1
사회공헌형 일자리(어린이 교육 지도 등)	14	8.2
취미생활을 통해 부수입 얻는 일자리(여가형 직종)	51	30.0
기타	5	2.9
합계	170	100.0

-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희망 근로시간에 대해 10시간 미만 42명(24.9%),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31명(18.3%),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30명(17.8%),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2명(13%), 10시간 이

상~20시간 미만 17명(10.1%),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14명(8.3%), 60시간 이상~70시간 미만 13명(7.7%)순으로 나타남(표 5-29. 참고).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은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대다수 노인들이 전일제 근무보다는 시간제·임시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29> 희망하는 근로시간

구분	빈도(명)	비율(%)
10시간 미만	42	24.9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7	10.1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	17.8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2	13.0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31	18.3
5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4	8.3
60시간 이상 ~ 70시간 미만	13	7.7
합계	169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희망하는 월 평균 소득 인식 분포를 보면(표 5-30. 참고), 100만원 미만을 바라는 응답자가 87명(51.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7명(33.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9명(11.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명(2.9%), 그리고 400만원 이상 2명(1.2%) 순으로 나타남.
-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받고자 하는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응답 노인 대다수가 2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소득을 원하고 있음(84.7%).

&lt;표 5-30&gt; 희망하는 월 평균소득

구분	빈도(명)	비율(%)
100만원 미만	87	51.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7	33.5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9	11.2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2.9
400만원 이상	2	1.2
합계	170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1순위 조건들을 살펴보면(표 5-31. 참고), 먼저 ‘과거 내가 주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경우가 28명(1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가 희망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맞아야 한다’ 26명(15.3%),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 26명(15.3%),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 26명(15.3%),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26명(15.3%),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14명(8.2%),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10명(5.9%), ‘내가 하는 일이 지역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6명(3.5%), ‘사회적 체면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3명(1.8%), ‘직장(일터) 내에 또래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2명(1.2%),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2명(1.2%), 기타 1명(0.6%)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조건으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명(1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29명(17.3%), ‘내가 희망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맞아야 한다’ 25명(14.9%),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표 5-31> 취업 시 가장 우선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26	15.3	5	3.0
내가 희망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맞아야 한다	26	15.3	25	14.9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	26	15.3	9	5.4
과거 내가 주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8	16.5	14	8.3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10	5.9	20	11.9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14	8.2	29	17.3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	26	15.3	32	19.0
사회적 체면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1.8	6	3.6
직장(일터) 내에 또래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2	1.2	10	6.0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2	1.2	4	2.4
내가 하는 일이 지역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6	3.5	12	7.1
기타	1	0.6	2	1.2
합계	170	100.0	168	100.0

한다' 20명(11.9%), '과거 내가 주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14명(8.3%), '내가 하는 일이 지역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어

야 한다’ 12명(7.1%), ‘직장(일터) 내에 또래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10명(6%),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 9명(5.4%), ‘사회적 체면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6명(3.6%),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5명(3%), ‘나이 어린 사람들로 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4명(2.4%), 기타 2명(1.2%) 순으로 나타남.

- 조사응답 노인들이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였는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5-32. 참고), 1순위 노력 유형으로는 ‘시니어클럽 의뢰’가 61명(3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적 인맥을 통해 부탁(친구, 친·인척, 선·후배 등)’ 49명(29%), ‘읍·면·동사무소, 시청·도청 담당 부서 의뢰’ 14명(8.3%), ‘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관 의뢰’ 13명(7.7%), 기타 11명(6.5%), ‘신문 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9명(5.3%), ‘대한노인회(제주, 서귀포지회)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의뢰’ 4명(2.4%), ‘고용노동부 고령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의뢰’ 3명(1.8%), ‘사설 직업안내소 의뢰’ 3명(1.8%), ‘취업(일자리) 박람회’ 1명(0.6%),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의뢰’ 1명(0.6%)순으로 나타남.
- 2순위 노력으로는 ‘개인적 인맥을 통해 부탁(친구, 친·인척, 선·후배 등)’이 68명(42.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읍·면·동사무소, 시청·도청 담당 부서 의뢰’ 24명(15%), ‘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관 의뢰’ 14명(8.8%), ‘신문, 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11명(6.9%), ‘사설 직업안내소 의뢰’ 10명(6.3%), ‘시니어클럽 의뢰’ 9명(5.6%), 기타 8명(5%), ‘대한노인회(제주, 서귀포지회)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의뢰’ 7명(4.4%), ‘고용노동부 고령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의뢰’ 4명(2.5%), ‘취업(일자리) 박람회’ 3명(1.9%), ‘중장



년일자리희망센터 의뢰' 2명(1.3%)순으로 나타남.

<표 5-32> 취업을 위한 지난 1년간 노력 여부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관 의뢰	13	7.7	14	8.8
읍·면·동사무소, 시청·도청 담당 부서 의뢰	14	8.3	24	15.0
시니어클럽 의뢰	61	36.1	9	5.6
대한노인회(제주, 서귀포지회)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의뢰	4	2.4	7	4.4
고용노동부 고령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의뢰	3	1.8	4	2.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의뢰	1	0.6	2	1.3
시설 직업안내소 의뢰	3	1.8	10	6.3
개인적 인맥을 통해 부탁(친구, 친·인척, 선·후배 등)	49	29.0	68	42.5
신문, 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9	5.3	11	6.9
취업(일자리) 박람회	1	0.6	3	1.9
기타	11	6.5	8	5.0
합계	169	100.0	160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지난 1년간 취업을 위해서 노력한 일들 가운데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개인적 인맥(가족, 친족, 친구, 선·후배 등),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와 시청 시청의 담당 부서 이용 등을 우선 들고 있음. 사실상 시니어클럽은 정부 및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사

업을 위탁받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관임. 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 확충이 필요함.

-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개인적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에 가능한 시니어클럽 혹은 대한노인회 제주지부의 취업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 조사대상자들이 취업(일)하고 싶은 구체적 일자리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5-33. 참고), 먼저 관광·문화해설사가 40명(23.5%)으

<표 5-33> 취업하고 싶은 구체적 일자리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아파트 경비관리직	12	7.1
주차장 관리원	2	1.2
일일 노무직(공공근로)	20	11.8
관광·문화해설사	40	23.5
환경 관리원(청소 등)	5	2.9
산림 관리원	8	4.7
보조 교사	14	8.2
식당보조원	3	1.8
조리사	10	5.9
간병인	3	1.8
급식지도원	2	1.2
농사일 하는 농부	35	20.6
기타	16	9.4
합계	170	100.0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사일 하는 농부 35명(20.6%), 일일 노무직(공공근로) 20명(11.8%), 기타 16명(9.4%), 보조 교사 14명(8.2%), 아파트 경비관리직 12명(7.1%), 조리사 10명(5.9%), 산림 관리원 8명(4.7%), 환경 관리원(청소 등) 5명(2.9%), 식당보조원 3명(1.8%), 간병인 3명(1.8%), 급식지도원 2명(1.2%), 주차장 관리원 2명(1.2%)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제주지역은 타 시도와는 달리 산업구조에 따른 직업분화 특성상 노인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 보기 힘들. 대체로 제주지역은 관광산업과 농업이 핵심산업이므로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다른 노인일자리들은 단순 노무직 혹은 서비스 직종에 속하는 일로써 임금 수준이 낮고 임시직 일자리임.
- 조사대상 노인들이 앞으로 몇 년간 일할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결과를 보면(표 5-34. 참고), 먼저 기간에 관계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응답 노인들이 110명(65.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6년 26명(15.4%), 7~8년 16명(9.5%), 3~4년 12명(7.1%), 사업체(고용주)가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4명(2.4%), 그리고 1~2년 1명(0.6%)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노인들은 건강히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노후생활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경제생활의 자립 역량을 키워나가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lt;표 5-34&gt; 향후 일할 계획 기간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1~2년	1	0.6
3~4년	12	7.1
5~6년	26	15.4
7~8년	16	9.5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110	65.1
사업체(고용주)가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4	2.4
합계	169	100.0

- <표 5-35>은 조사대상 노인들이 얼마나 취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 취업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71명(42.0%)은 ‘경험이 없는 일이라도 하겠다’고 인식하였음.
  - 취업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90명(53.5%)은 ‘원하지 않는 직종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64명(37.8%)은 ‘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108명(64.3%)은 ‘교통수단이 불편할 경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보였음.
  - 취업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95명(56.5%)은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을 하겠다’는 인식을 보였음.
  - 취업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80명(47.7%)은 ‘원하지 않는 근무환경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음.

<표 5-35> 취업 희망 정도

구분	취업 희망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경험이 없는 일이라도 하겠다	18 (10.7)	37 (21.9)	43 (25.4)	60 (35.5)	11 (6.5)	169 (100.0)
원하지 않는 직종이라도 하겠다	37 (22.0)	53 (31.5)	39 (23.2)	36 (21.4)	3 (1.8)	168 (100.0)
임금수준이 낮아도 일을 하겠다	31 (18.3)	33 (19.5)	65 (38.5)	37 (21.9)	3 (1.8)	169 (100.0)
교통수단이 불편해도 하겠다	45 (26.8)	63 (37.5)	34 (20.2)	23 (13.7)	3 (1.8)	168 (100.0)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을 하겠다	13 (7.7)	18 (10.7)	42 (25.0)	81 (48.2)	14 (8.3)	168 (100.0)
원하지 않는 근무환경이라도 다니겠다	31 (18.5)	49 (29.2)	61 (36.3)	23 (7.8)	4 (2.4)	168 (100.0)

- 이처럼 조사응답 노인들이 비록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력, 임금, 직장 접근성, 근무환경 등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취업을 결정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취업하는데 1순위 문제점들을 보면(표 5-36. 참고), 우선 건강문제가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준다는 응답자가 111명(38.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적합한 직종 부족 73명(25.6%), 일자리가 절대 부족 53명(18.6%), 연령제한 26명(9.1%), 취업 정보 부족(구인) 13명(4.6%), 낮은 임금 6명(2.1%), 출퇴근 교통문제 1명(0.4%), 재취업 기술부족(능력) 1명(0.4%), 사회적 차별 1명(0.4%)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지역 노인들의 취업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노인건강 유지, 적합한 직종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노인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문제는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

<표 5-36> 취업 시 문제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일자리가 절대 부족	53	18.6
취업 정보 부족(구인)	13	4.6
적합한 직종 부족	73	25.6
건강문제	111	38.9
연령제한	26	9.1
출퇴근 교통문제	1	0.4
재취업 기술부족(능력)	1	0.4
시간부족	-	-
낮은 임금	6	2.1
사회적 차별	1	0.4
자녀들의 만류	-	-
기타	-	-
합계	285	100.0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된 응답 분포를 보면(표 5-37. 참고), 조사응답자 135명(45.6%)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93명(31.4%)은 알고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

<표 5-37>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46	15.5
대체로 모른다	89	30.1
그저 그렇다	68	23.0
대체로 알고 있다	82	27.7
매우 잘 알고 있다	11	3.7
합계	296	100.0

-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 응답 분포를 보면(표 5-38. 참고), 먼저 ‘노인에게 적합한 우선고용 직종개발’이 87명(2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 고용 및 교육훈련기관(시니어클럽, 노인회 등)에 대한 지원’ 65명(22.3%), ‘사업체(기업)의 노인고용 직종에 노인고용 의무 강화’ 29명(9.9%), ‘노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방안 마련’ 29명(9.9%),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확충 및 고용기업 보상 강화’ 24명(8.2%), ‘재취업 확대에 따른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21명(7.2%), ‘노인취업 활성화 홍보 강화’ 21명(7.2%), ‘노인자신의 의식변화 및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6명(2.1%), ‘중앙정부에 정년연장제도 요구’ 4명(1.4%), ‘노인취업박람회 등 개최’ 3명(1%), 기타 3명(1%)순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노인에게 적합한 우선고용 직종개발’이 47명(16.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고용 및 교육훈련기관(시니어클럽, 노인회 등)에 대한 지원’ 44명(15.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확충 및 고용기업 보상강화’ 39명(13.4%), ‘사업체(기업)의 노인고용직종에 노인고용 의무 강화’ 38명(13.1%), ‘노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방안 마련’ 34명(11.7%), ‘재취업 확대에 따른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30명(10.3%), ‘노인취업 활성화 홍보 강화’ 25명(8.6%), ‘노인자신의 의식변화 및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16명(5.5%), ‘중앙정부에 정년연장제도 요구’ 8명(2.7%), ‘노인취업박람회 등 개최’ 8명(2.7%), 기타 2명(0.7%)순으로 나타남.

&lt;표 5-38&gt;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노인 우선고용에 적합한 직종개발	87	29.8	47	16.2
사업체(기업)의 노인고용직종에 노인고용 의무 강화	29	9.9	38	13.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확충 및 고용기업 보상강화	24	8.2	39	13.4
노인고용 및 교육훈련기관(시니어클럽, 노인회 등)에 대한 지원	65	22.3	44	15.1
재취업 확대에 따른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21	7.2	30	10.3
노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방안 마련	29	9.9	34	11.7
중앙정부에 정년연장제도 요구	4	1.4	8	2.7
노인취업박람회 등 개최	3	1.0	8	2.7
노인취업 활성화 홍보 강화	21	7.2	25	8.6
노인자신의 의식변화 및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6	2.1	16	5.5
기타	3	1.0	2	0.7
합계	292	100.0	291	100.0

- 따라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특성 그리고 노인문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노인고용 활성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제주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특히 시니어클럽 등)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 및 시사점

####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전체 조사대상 노인(296명) 가운데 62.8%(186명)가 은퇴 전 직업으로 이 주로 농·축·수산업, 자영업, 일용단순직에 종사하고 있고, 반면에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이런 결과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음.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와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노인친화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따라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노인특성에 적합한 맞는 노인친화적 직종 개발과 직업재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주된 수입원이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41.6%(123명),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노령연금 등)에 31.7%(94명), 그리고 자녀 등의 보조에 16.9%(50명)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근로소득이 창출 안 되거나 자녀 등의 보조가 없을 경우에 노후생활의 안정화에 어려움이 초래할 가능성이 큼. 향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설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월 평균수입을 보면 150만원 미만이 69.3%(205명)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 혼자 혹은 노인부부가

한 달 평균 수입액이 적어도 150만원 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적연금 혹은 근로소득 그리고 자녀로부터 이전소득 등이 합산되어야 할 것임.

-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34.8%(103명)가 현재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고, 46.6%(138명)는 보통 수준, 그리고 경제생활 수준이 좋은 편이라는 인식은 18.6%(55명)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경제생활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에게 소득창출 기회(특히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할 것임.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57.4%, 170명)이 본인(배우자) 생활비로 주로 지출하고 있고, 다음으로 약값 및 의료비(29.1%, 86명)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이 주로 지출하는 항목이 생활비와 약제 및 병원비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조사용답 노인들 가운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46.0%(136명)을 차지하고 있고, 보통 33.4%(99명), 그리고 건강 양호가 20.7%(61명)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응답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정책과 연계하여 노후 생활 안정화 정책 사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나.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현재 생활 상의 가장 불편한 사항과 관련하여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34.8%(102명),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출하지 못하는 일 13.7%(40명), 그리고 식사 챙겨먹는 일이 13.3%(39명)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노인친화적 교통편의 제공, 그리고 식생활 개선 등과 관련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현재 생활상의 가장 어려운 점을 보면, 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36.2%(106명), 생활비 부족한 점 14.7%(43명), 그리고 특별히 할 일없이 집에만 있는 일이 12.6%(37명)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들의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 생활비와 용돈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잘 보내는 일이 중요함. 그래서 노인들의 보건의료정책, 소득보장정책, 그리고 여가정책 등이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다. 경제생활 상태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생활비와 용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본인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정부 (각종 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들이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 후에도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 창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에 예산 확충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임.
- 조사대상 노인들의 2013년도 연간 소득 분포를 보고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들 가운데 소득액이 500만원 미만이 59.6% (59명)을 차지하여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연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때 다른 소득원이 없을 경우에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이런 노인층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대상 노인들이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원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가 39.6%(57명)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69.1%(38명)이 연간 연금소득 규모가 500만원 미만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소득원이 필요함.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조사대상 노인들의 연금 소득이 연간 100만원~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70.7%(41명)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다수 노인들은 매달 9만원~13만원 미만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조사용답 노인들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수급하는 사례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 만큼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노후생활 안정화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후준비를 잘 하지 않은 결과임을 함의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 자신의 2013년도 연간 총소득액이 500만원 미만인 34.1%(76명),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0.6%(46명)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1,000만원 미만의 연간 소득을 얻고 있음. 반면에 조사응답 노인의 1/4 정도는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음.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 간에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2013년도 연간 총소득액이 1,000만원 미만인 45.7%(113명), 1,000만원~2,000만원 미만 20.6%(51명)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66.3%(164명)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부부의 연간 총소득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경제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겪을 것임. 그래서 저소득 부부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조사대상 노인 자신이 부동산(땅, 집, 건물 등) 자산이 있는 경우가 49.8%(113명)이고, 이들 가운데 그 자산 가치가 1억원 미만인 경우가 39.8%(43명),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43.5%(47명), 그리고 2억원 이상이 30.6%(33명)로 나타남.
-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한 노인들은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거나 혹은 부동산 처분을 통해 재산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적용·운용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 자신이 부채를 진 경우는 26.8%(51명)이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8.3%, 28명)이 2,500만원 미만의 부채를 안고 있음. 그리고 2,5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2.9%(11명), 그리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8.8%(9명)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이 부채를 상환할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노후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므로 부채 상황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 심각한 빈곤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라. 경제활동 참여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45.3%(134명)이고, 반면에 과거에 직업을 가졌으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49.7%(147명)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종사하는 직업유형을 보면, 농·수·축산업의 종사자 32.3%(43명), 단순일용직 18.0%(24명), 판매 및 서비스직 16.5%(22명)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 대부분이 제주지역의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일에 종사하고 있음. 향후 퇴직 후에도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할 것으로 예상됨.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는 생계비(55.6%, 74명)과 용돈(20.3%, 27명)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

남.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생계비(생활비)와 용돈 정도를 벌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수입이 있으면 노후생활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조사응답 노인들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노동, 일)을 계속할 의향을 보이고 있음(83.2%, 109명). 이처럼 노인들은 전혀 새로운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을 주로 선택하여 계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함.
- 조사대상 노인들이 과거에 가장 오래 종사하였던 직업 유형을 보면, 주로 농·수·축산업(39.9%, 57명)과 단순일용직(12.6%, 18명)에 많이 종사하였음. 따라서 제주노인들에게 재취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과거 직업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거 농업에 종사하였던 노인이 다른 직업을 구할 경우에 재취업 교육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것임.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53.8%)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업을 그만 두게 되었다는 것임. 따라서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하려면 건강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능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함.

#### 마. 취업활동 사항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58.1%, 169명)이 향후에 취업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열망이 크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개

발과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됨.

- 이처럼 취업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생활비(생계비)와 용돈 마련에 있음.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비와 용돈에 대한 노인특성별로 잘 분석하여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결정은 향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산정액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조사대상 노인들의 희망하는 직종은 과거에 종사하였던 동일 혹은 유사직종을 대체로 많이 원하였고(39.4%, 67명),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부수입을 얻는 여가형 직종을 희망하는 경우(30.0%, 51명)도 많았음. 따라서 노인들은 평생 직업 활동을 하면서 이미 익숙하거나 유사한 일자리 혹은 소일(취미활동) 하면서 용돈도 벌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
- 조사응답 노인들이 희망하는 월 평균소득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51.2%(87명) 그리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3.5%(57명)으로 나타나 대다수 노인들은 200만원 미만이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84.7%).
- 조사대상자 노인들은 취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일, 과거의 일과 유사한 일, 적절한 근무조건, 희망 임금수준, 취업기회 제공 등에 모아지고 있음. 이러한 채용조건들은 노인들에게 중요하므로 앞으로 사업체(기업체)가 노인인력 채용 시 고려하면 좋을 것임.
- 조사대상 노인들의 지난 1년 동안 취업 노력 유형을 보면 시니어클럽과 개인적 인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향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응답 노인들이 취업 희망하는 구체적 일자리 유형을 보면, 관광·문화해설사(23.5%), 농사일하는 농부(20.6%), 공공근로직(11.8%), 보조교사(8.2%), 아파트 경비관리직(7.1%)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인들의 일자리는 제주관광과 관련된 일자리 혹은 농업경영인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이 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조사응답 노인들이 취업 시 문제점으로 건강문제(38.9%, 111명), 적합한 직종 부족 (25.6%, 73명), 그리고 일자리 부족(18.6%, 53명)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건강이 좋아야 하고, 노인친화형 직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45.6%(135명)가 모른다는 응답을 보였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임.
- 조사대상 노인들은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 노인 우선고용에 적합한 직종개발(29.8%, 87명), 노인고용 및 직업훈련교육기관(시니어클럽 등)에 대한 지원 확충(22.3%, 65명), 노인고용의 사회적 편견 불식(9.9%, 29명), 노인고용의무 강화(9.9%, 29명) 등이 중요하게 인식됨. 이러한 노인고용 활성화 현안과제들은 고용정책 담당자들이 적극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제6장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16년에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음. 그래서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의 고령사회 보완계획(2012-2015)을 수립하였음.
- 또한 박근혜 정부는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아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 빈곤률 완화와 노후생활 안정화를 기하려는 정책목표를 세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정책과 연계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를 수립하여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할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제주지역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604,670명)의 13.1%(79,455명)를 차지하여 2015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도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를 시작하였고, 노인 인구층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와 있음.
- 제주는 타 시·도 보다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하여 고령사회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범지역이 될 필요가 있음.
- 그래서 제주사회가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때 ‘도민이 행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장에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미션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본내용 그리고 향후 정책적 대응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1. 기본방향

-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와 질적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차별적인 정책사업 발굴과 정책추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특히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및 보험지원, 노인고용정책 사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정부 노인소득보장 및 노인고용정책의 내실화
  - 국가 차원에서 우선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체계로 전환 필요
  - 정부의 노인소득보장 및 노인고용 활성화 정책이 실제로 노인 경제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필요
- 노후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
  - 노후생활 안정화는 경제적 소득 창출이나 지원 체계 구축 마련
  - 정부의 연금(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및 보험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노인의 소득보장 및 노인고용정책의 통합적 접근
  - 중장년 세대와 노인세대의 고용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및 사회참여 지원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
- 노인주거, 노인보건의료, 노인여가정책 등과의 정책 연계 강화
  - 노후생활 안정화는 노인주거, 보건의료 및 여가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상호 보완 모색 필요
- 가족돌봄과 지역사회 연계된 노후생활 지원 확충
  -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강화
  - 지역사회의 민간부문(시민단체, 노인대학,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지원 확충
-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법적·제도적 규정 때문에 사회적 부양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2. 기본전략

- 노후생활 안정화 기반구축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 제주지역 거주 노인들이 퇴직 전과 퇴직 후를 구분하여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필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 노인세대의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형편, 건강상태, 취업 유무, 경력 등)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필요
- 노인층 유형별로 경제적 생활 안정화 전략 모색
  -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노인층 보다 세분화하여 그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기 노인층(55세~64세)은 가능한 자립생활에 중점을 두고, 중기 노인층(65세~74세)은 자립과 지원, 후기 노인층(75세~84세)과 장수 노인층(85세 이상)에게는 지원 중심으로 나가야 할 것임.
-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노인들의 자립역량 강화
  - 전기 노인층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단체)으로부터 일방적 지원보다는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 필요
  - 퇴직 후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노후에 경제적 생활적응을 위한 자아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전략
  - 퇴직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을 통한 고용촉진
  -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유지, 그리고 용돈 혹은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노인 직종개발 및 재취업 연계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내실화

○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과의 통합적 연계 전략 구축

- 노후생활의 안정화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여가 분야 등과 연계한 노인복지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도민과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

- 제주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민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움도 필요함.
-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혹은 기관(각종 자생단체,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들이 소위 ‘우리동네 노인사랑’ 네트워크를 만들어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행복 증진에 도움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동시에 노인에 대한 배려·존중의 사회적 의식 고취

○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 대한 긴급지원체계 구축 전략

- 법적·제도적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 유지가 힘든 차상위계층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긴급지원체계 구축 마련 필요

○ 중앙 정부와의 협력적 전략

- 노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은 정부의 노인복지, 노인고용, 연금 및 보험 그리고 노후생활 보장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노후생활 안정 관련하여 조례로 입법 시행할 수 있는 법·제도 검토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와 상호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이 요망됨.
- 전기 노인층(55세~64세)의 귀농·귀촌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정부 차원의 상담 및 정책적 지원 확충이 요구됨.

### 3. 기본내용

○ 노후생활 안정화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강화

- 제주도내 노인유형별(전기 노인층, 중기 노인층, 후기 노인층, 장수노인층)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 및 운영의 내실화
-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원 부서간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함. 다시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도청 내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청소년과, 여성가족정책과, 보건위생과, 경제정책과, 문화정책과, 친환경농정과 등과 같은 부서들 간의 협력 필요
- (가칭)노후생활 안정화 관련 지원조례 제정

○ 노인들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 고령사회에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층 혹은 가족부양과 사회적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노인층에게 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 노인고용 및 사회참여 역량 강화 및 지원체제 구축

-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 사회참여의 활성화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적 협력체제 구축

- 지역사회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 제공 필요
- 노인세대가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노인이 가진 경력, 기술, 재능 등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노인세대와 지역사회 간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 향후 정책 대응과제

- 제주지역 노인들이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다양한 도전(소득, 건강, 주거, 고용, 여가, 교육 등)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선 노후생활의 안정을 꾀하여 삶의 질적 수준 유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정책과 변화, 노인일자리와 노인고용지원 정책, 제주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를 유지해 나가고 결국 노인의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대응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가. 중앙정부 수준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지원

### 1)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획기적 변화

- 우리나라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의 개선<sup>11)</sup>
  -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들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 나가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생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됨.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농어촌지역, 주거, 재산소유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빈곤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에 반영함.
  - 제주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고, 더구나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증가, 오랜 된 낡은 집, 낮은 생계비 유지에 불충분 등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 지역적 특성을 꼭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11)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과 지급액수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시행되는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안내 (<http://basicpension.mw.go.kr>)를 참고할 것.

-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자가 소유 집과 토지가 있거나 혹은 부양 가족이 있다는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기초연금제도로 부터 수혜를 받지 못하여 복지사각지대로 놓여 노인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2) 퇴직 전 직장 내 진로전환 인프라 강화

- 노인들이 노후생활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은퇴 후 사회적응, 재취업, 여가 및 사회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직자의 진로 및 직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진로전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진로 및 직업 전환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고승한·김기홍, 2013).
- 국가진로전환지원체제의 중심에 「국가진로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은퇴 전 재직자들이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중앙단위에서 「국가진로전환지원센터」는 관련부처들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공동 예산지원으로 독립적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노후생활 안정화에 자영업의 지속성 및 창업지원 강화
  - 예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및 경영과 관련한 인큐베이터 운영’을 통해 자영업 안정성 유지 및 성공적인 창업 지원 및 지속적 컨설팅 시행
  - 창업하게 되는 예비 노인의 위기관리를 지원하며, 기존의 자영업자가 직업전환을 할 경우 취업지원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취업알

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비 노인층(전기 노년층)들이 퇴직 후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거나 혹은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석, 창업 컨설팅 지원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다기능생활(Multi-life) 지원

- 퇴직 이전에 기업 내에서 각종 동호회(여가, 자원봉사, 취미생활 등) 활동을 지원함.
-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강좌 수강을 지원함.
- 기업복지 차원에서 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PCG(Primary Care Group)를 제도화시켜 퇴직 준비를 잘 시켜 나감.

○ 퇴직 예정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가칭)학습휴가제(혹은 퇴직 준비 휴가제) 도입

- 근로자 재충전 및 제2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필요함.
- ‘학습휴가제’는 퇴직 준비하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휴가기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함.
- ‘학습휴가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 혹은 일부 지원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및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필요함.

- 2012년 7월부터 노후생활지원법이 정부 차원에서 제정 필요성 논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 통과되지 못함.
- (가칭)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현재 빈곤한 노인의 탈빈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인세대가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노년기의 공적 혹은 사적 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퇴직(은퇴) 전에 노후준비 설계와 교육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이소정, 2013).
  -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가칭)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 3) 정년연장법의 실효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

- 정년연장 유예기간에서 점진적인 퇴직제도 확대
  - 우리나라의 정년은 ‘정년연장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게 되지만,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임.
  -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적용하게 됨. 다만, 공공 부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다수는 정년연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진적인 퇴직 제도의 보완이 요

구됨.

- 정년연장 지원을 위한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도입
  - 고령자(베이비붐 세대 포함)의 고용을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감액분을 지원하여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함.
  -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으로 그치고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법적 강제조항 신설이 요구됨.

#### 4) 복지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노인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혹은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빈곤생활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범위의 확대와 산정기준의 현실성 반영 필요
  - 자가 소유의 주택 혹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 자가 소유의 주택에 살지만 부양가족이 실제로 없어(행방불명, 별거 등) 실제로 빈곤생활의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함.

#### 5)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실화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통합
  - 노인일자리 창출에 의한 노후생활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래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후소득보장과 연계하여 기획, 집행, 평가 그리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이 부족하고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인친화형 직종을 개발하고, 또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주거공간과 일자리를 결합한 생활공동체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위해 이동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함.
  -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생계비(생활비)와 용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임금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기업)의 노인고용 직종에 노인고용 의무 할당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공공기관에 노인고용의무할당제 도입하여 시범 실시 후 일반 사업체(기업)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활성화 위한 통합적 운영 및 지원 강화
-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기획 및 지원 그리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정부(보건복지부 혹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제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활성화 촉진과 종합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예, 노인고용지원센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선 노인건강 유지와 질병치료가 연계되어야 할 것임. 즉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정책과 노인고용 정책간의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 지역산업과 노인특성(성별, 학력,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직종 개발 필요
- 노인일자리 임금수준, 근무조건,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필요
-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직 종사 경력의 노인인력 DB 구축

6)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의 재설계 및 지원 체계 구축

○ 퇴직 전과 퇴직 후 재취업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 퇴직 후 노인들이 다른 직업(일)을 희망할 경우 퇴직 전에 재취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지원
- 민간 직업훈련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층의 취업욕구 충족을 위해 재취업 직업훈련교육의 재설계 후 교과과정 개설
- 직업훈련전문기관이 고령친화적 기업(사업체)간에 취업 연계 활동 강화

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지원

1)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추진 부처와 협력 증진

- 중앙 부처 노인복지 및 노인고용 담당 부서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 7. 1) 이후 일자리 및 고용정책 관련

중앙 정부와 네트워크 협력 체제 구축이 미흡함.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노인고용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 관련 부서에 파견 근무 적극 추진 필요함.

## 2)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검토 및 시행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검토 및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적 운영 실태와 평가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주지역의 빈곤 종합실태조사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실제로 제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계비 정도, 소득평가기준, 재산기준, 자격요건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sup>12)</sup>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주노인의 탈빈곤 문제의 종합적 대책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빈곤노인에 대한 정기적 종합실태 조사 실시
  - 제주지역의 빈곤노인 실태 DB 구축
  -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제주노인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내 노인빈곤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하여 종합대책 보고서 작성 필요

---

12) 서울특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서울시 기초보장제도에서는 급여 대상 기준을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직계혈족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음.



### 3)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확충
  - 중앙정부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현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을 적절히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함.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이나 제도의 질적 개선을 통해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현금지원 대신 현물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부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음.
  - 예를 들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돌봄서비스, 예방 건강서비스(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 진료비 지원), 복지서비스(무주택어르신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목욕료, 이·미용료, 틀니, 보청기, 간병 등)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들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전반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개선은 물론 일반노인에게도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원 확충이 요구됨.

### 4) 제주지역에 진로전환지원 체계의 구축

- (가칭) 「제주진로전환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 기존의 지역별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의 고령자 관련 업무와

정부의 위탁 지원 예산으로 운영 중인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와 시니어클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등을 총괄하는 전문화된 지역전담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칭) 「제주노인고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재)노사발전재단이 제주지역에 설립한(2013. 11. 1) 「제주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가 당분간 (가칭) 「제주진로전환지원센터」와 (가칭) 제주노인고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을 대신할 수도 있음.
- (가칭) 「제주진로전환지원센터」는 「국가진로전환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예비노인(특히 베이비붐 세대)과 전기 노인층에 대한 경력전환과 재취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년퇴직 후의 중기 노인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도 수행함.

5)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노후생활지원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정부 차원에서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 제주지역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장수수당 지원대상이 만 8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장수노인의 급증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함.
-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과 관련해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

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서 실제로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생활지원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주지역 노인복지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증진 제고 필요.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충

-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시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함.
- 노인 재취업 열망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 제공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기능적 역할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임.

○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 국가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고령으로 인해 노후생활, 자산관리, 이동 등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제도」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함.
-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의 유용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 노후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정책 관련 부서와 기관(단체)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일자리 창출 담당 부서 간의 협력
  -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청소년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친환경농정과, 제주고용센터, 각 행정시 일자리 담당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 필요
  - 도청과 행정시 내부의 담당 부서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업무를 단위사업 중심으로 총괄 처리하기 때문에 종합적 시너지 효과 창출에 미흡함.
  -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고용활성화 및 창업 등에 대한 업무들은 여러 부서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필요
-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민간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행정기관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도내 대학, 민간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기관 등과 네트워크 협력 강화
  -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

7)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과 타 정책과의 통합적 연대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 정책만으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없음.

- 노후생활의 안정화는 다른 노인복지정책(주거복지, 보건의료복지, 여가복지, 교육복지, 가족복지 등)과의 상호 연계성 확보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 발휘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보다 통합적 접근에서 노인복지정책의 통합화·종합화 노력 필요

## 8)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노인에 대한 긴급보호지원 체계 구축

### ○ 제주지역 내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노인 DB 구축

- 기초생활보장수급 혹은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어 빈곤한 생활을 하는 노인층에 대한 DB 구축 급선무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 노인층 DB에 기반을 두어 수급대상자별 보호·지원 내용 결정

###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 노인층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실시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 노인층은 국가 및 행정으로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 노인층 대상 조사연구 사업에 기반을 둔 보호 지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행정시 차원에서 긴급 및 중점보호·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함.

## 9) 제주지역 노후소득보장정책 관련 R&D 사업 활성화

### ○ 제주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지원

- 노후생활 안정화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노후소

득보장정책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연구지원 확충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고용 정책 관련 R&D 사업 지원
  - 노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와 노인고용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추진 필요
  - 노인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주거정책, 여가정책, 문화정책 분야 등에 대한 연구사업도 추진 필요

#### 10) 노인친화적 직종 개발 및 보급 사업

- 제주노인에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일자리 창출
  - 제주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대표적 관광지역이고, 청정한 환경, 농업지역과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노인에게 적절한 직종 개발이 필요함.
  - 관광·문화해설사, 생태관광 해설사, 체험관광지도사, 제주문화알리미, 제주올레지킴이 등의 직종 개발에 따른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제주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서 실제로 청정한 제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환경지킴이, 환경알리미, 환경해설사 등의 직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제주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가칭)시니어영농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역 및 마을별로 혼자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이 함께 참여함.

-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 가운데 제주의 청정 농산물과 해·수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택배로 우송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노인들이 일정 지역 내에서 여러 농산물과 해·수산물 판매소에서 택배 우송물을 수거하여 송부하는 택배 사업 직종을 개발하여 종사할 필요가 있음.
  - 제주의 여성노인들이 제주의 전통음식(예, 오소리술, 오메기술, 빙떡, 오메기떡, 몸국, 꿩엿, 호박엿, 닭엿 등)을 만들고, 젊은 여성들은 판매·마케팅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함. 그래서 (가칭) 여성모다드림사업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역 및 마을별로 부녀회와 노인회 중심으로 사업 구상 및 추진을 계획하면 좋을 듯함.
- 사회적경제 부문에 노인친화적 직종 개발 및 취업 연계 사업
- 제주지역에 사회적경제 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 회사, 자활기업)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들이 제공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부문의 노인친화적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알선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시니어클럽, 노인인재은행,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과 연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노인재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취업교육 및 직종 선택 컨설팅, 취업연계 및 취업알선 등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노인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노인들 스스로 창업(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하는 방안도 모색함. 노인창업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컨설팅과 자문이 필요하고, 특히 노인들은 청년들과 함께 하는 창업과 경영 전략을 세우는 기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인과 청년이 연대하여 사회적기업(혹은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노인은 생산분야에 집중하고, 청년은 판매 마케팅 분야를 맡아 세대간 통합형 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을 창업하여 청년 및 노인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마을별 혹은 지역별로 노인들은 토종닭을 생산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생산한 토종닭을 시장에서 판매·마케팅하는 세대간 통합형 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임.

○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취업 활성화

- 제주지역에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예컨대, 병원, 요양원, 시니어클럽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노케어사업, 노인공동창업, 노인교육 지도사(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육) 등의 사업들을 확충 및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1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사업시행기관 : 제주 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 취업의 사회적 관심 제고 필요



- 도내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SNS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산
-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화와 노인복지증진 효과의 극대화.
- 노인일자리 박람회 정기적 개최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 다.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시스템(community-based elderly care system) 구축

- 노인이 은퇴 전에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고,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여 국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혹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빈곤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혹은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도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빈곤노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이웃, 동네, 마을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강요되거나 동원되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에 의한 자발적·적극적 참여와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1)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care givers) 네트워크 구성

- 지역사회(이웃, 동네, 마을, 동, 읍·면지역 등) 내에서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자원 조사

-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빈곤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사회 내의 각종 자생단체(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자원 조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노인 돌봄제공자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 자생단체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care giving)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네트워크가 형성 후 실질적 활동 전개
  - 지역사회에서 빈곤노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예, 집수리, 간병, 운동, 말벗, 나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등) 제공 관련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care giving) 네트워크의 활동이 실제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

## 라. 노인 개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 1) 퇴직 전과 후의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

- 노인 개인이 노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립생활에 대한 개인적 노력 필요
-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에 적극 참여
  -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적극 관심 및 방문

## 2)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 노인 스스로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정책 사업(노인돌봄, 연금 및 보험, 보건의료서비스,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문의 및 이해가 필요
- 노인 스스로 자신의 입장에서 지원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다른 노인과의 정보 교류가 필요
- 퇴직 후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조직)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방문
  -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변에 노후생활의 안정, 일자리, 건강, 여가,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기관(단체)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혹은 도움을 요청함. 예, 시니어클럽,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종합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평생학습센터 등을 방문함.

## 3) 노인 재취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노인 혹은 노인들에게 노인 재취업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정보 제공
- 제주지역에서 제공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 필요

## 4)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노인노후설계, 건강, 여가,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 마. 주체별·시기별 추진방안

- 본 연구에서는 제주가 고령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예산범위, 제도의 구조적 특성, 인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적정 추진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였음(표 6-1. 참고).<sup>13)</sup>
- 추진주체의 설정은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노인 개인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 추진시기는 단기, 중·장기 등 2단계로 구분하여 향후 5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추진시기 구분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화(특히 대통령과 도지사의 변화 등)를 고려하여, 단기는 2015~2016년, 중·장기는 2015~2019년까지 혹은 2020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에 따른 단기사업은 주로 단기간에 조속히 추진해야 할 유형이고, 중·장기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 사회적 합의, 그리고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류됨.
  - 향후 다양한 단기와 중·장기 정책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추진주체와 추진 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하지 못함.

---

13) <표 6-1>은 본 연구의 정책과제별 주요사업 유형과 추진주체, 그리고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연구자에 의해서 정리·작성되었음을 밝혀둠.

<표 6-1> 노후생활 안정화의 대응과제 실천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구 분	주요 사업	추진주체	추진시기	
			단기	중·장기
중앙정부 수준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지원	•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점진적 변화	중앙정부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		
	• 퇴직 전 직장 내 진로전화 인프라 강화	중앙정부		
	- 국가진로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	"		
	- 노후생활 안정화에 자영업의 지속성 및 창업지원 강화	"		
	- 근로자 다기능 생활(multi-life) 지원	"		
	- 퇴직자의 경력개발위한 (가칭)학습휴가 제 도입	"		
	- (가칭)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가칭)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정년연장법의 실효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	중앙정부		
	- 정년연장 유예기간에서 점진적인 퇴직제도 확대	"		
	- 정년연장 지원을 위한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도입	"		
	• 복지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노인지원 확대	중앙정부		
	- 실질적 빈곤생활 노인에 대한 지원	"		
- 기초생활보장수급 산정 기준의 현실성 반영	"			

<표 6-1> 노후생활 안정화의 대응과제 실천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구 분	주요 사업	추진주체	추진시기	
			단기	중·장기
중앙정부 수준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지원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실화	중앙정부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통합	"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활성화 위 한 통합적 운영 및 지원 강화	"		
	-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		
	• 재취업 직업훈련교육의 재설계 및 지원체 계 구축	중앙정부		
	- 퇴직 전과 퇴직 후 재취업 직업훈련교 육 프로그램 운영	"		
지방자치단 체 수준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지원	•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추진 부처와 협력 증진	제주특별자치도		
	- 중앙 부처 노인복지 및 노인고용 담당 부서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검토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검토 및 도입	"		
	- 제주노인의 탈빈곤 종합대책 수립	"		
	•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확충	"		
	• 제주지역에 진로전환지원체계의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가칭) 제주진로전환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		
	- (가칭) 제주노인고용지원센터 설립· 운영	"		
	•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실효성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 노후생활지원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보호· 지원 조례 개정	"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충	"		
-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			

<표 6-1> 노후생활 안정화의 대응과제 실천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구 분	주요 사업	추진 주체	추진시기	
			단기	중·장기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정책 관련 부서와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도와 행정시의 일자리 창출 담당 부서 간의 협력	"		
	-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민간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		
	•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과 타 정책과의 통합적 연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	"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노인 긴급보호지원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내 빈곤노인 DB 구축	"		
	- 제주도내 빈곤 노인층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실시	"		
	• 제주지역 노후소득보장 정책 관련 R&D 사업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 노후소득보장 정책 관련 조사연구 사업 지원	"		
	-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관련 R&D 사업 지원	"		
	• 노인친화적 직종 개발 및 보급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노인에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일자리 창출	"		
	- 사회적경제 부문에 노인친화적 직종 개발 및 취업 연계 사업	"		
	-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취업 활성화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 강화	"			
- 노인일자리 박람회 정기적 개최	"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		
	-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자 지원 조사	"		
	• 지역사회 내 빈곤노인 돌봄제공 네트워크 활성화	"		

<표 6-1> 노후생활 안정화의 대응과제 실천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구 분	주요 사업	추진주체	추진시기	
			단기	중장기
노인 개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	• 퇴직 전과 후의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	노인 자신		
	- 자립생활에 대한 개인적 의지와 노력	"		
	-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노력	"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노인 자신		
	- 각종 노인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이해	"		
	- 각종 노인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 입수 및 교류	"		
	- 퇴직 후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조직)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방문	"		
	• 노인재취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노인 자신		
	- 노인에게 재취업 프로그램 개설 정보 제공	"		
	-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노인 자신			



## □ 참고문헌

- 고승한 (2006). 「제주지역노인의 노후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제주 발전연구원.
- 고승한·김기홍(2013).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고용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김진영(2008).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와 복지대책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전영록(2012).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황은주(2010). 「제주지역의 노인취업구조와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고용노동부(2009). 「노동시장분석과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
- 고용노동부(2009).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3). 「2013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통계(2013.9.)」 국민연금공단.
- 김경혜·윤민석(2013).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서울연구원.
- 김혜원(2008).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분석」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외솔(2011). “고령화시대의 한국 노동시장 전망.”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삼욱. 외(2007).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서울대학교출판부.

-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 보건복지부(2012. 3. 21).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복지 : 주요정책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5. 2.)
- 성명기(2009).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신현구(2011). 「2010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보고서: 일자리창출 교육 및 훈련사업군(재직자 훈련사업 부문 평가)」 KDI공공투자관리센터·한국노동연구원.
- 윤석명·신화연 외.(2011).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춘식·현외성 외(2005).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 이소정(2013).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2013.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세철·강인(2006). 「노인복지」 (주) 교문사.
- 정진호 외(2010). 「고령자일자리지원사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
- 제주특별자치도 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2014).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2014). 「내부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 「2012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3). 「사회적기업 개요집 95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은행 제주본부(2005). 「제주지역 인구고령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OECD.  
OECD(2008).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OECD(2008). 「OECD Factbook」 OECD.  
OECD(2008). 「Social Statistics」 OECD.

<인터넷 자료>

<http://basicpension.mw.go.kr>

<http://www.cooperatives.go.kr>

<http://www.kordi.go.kr>

<http://www.kostat.go.kr>

<http://www.moel.go.kr>

<http://www.nps.or.kr>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부 록 □

설 문 조 사 표

# 고령사회와 노후생활 안정화 대응과제 연구

## 면 접 조 사 표

--	--	--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제주지역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 5.

연구책임 : 고 승 한 박사

(☎ 726-6145. FAX. 751-2168. soc628@jdi.re.kr)

### 제 주 발 전 연 구 원

### 응 답 요 령

♣ 해당되는 사항에 V표 또는 O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상생활
------

1. 귀하는 현재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① 아주 불만족하다 | ② 대체로 불만족하다 |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만족하다  |
| ⑤ 아주 만족하다  |             |

2. 귀하는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식과 함께 사는 일        | ② 식사를 챙겨 먹는 일  |
| ③ 교통이 불편하여 외출 못하는 일  | ④ 화장실 출입하는 일   |
| ⑤ 말을 잘 못 듣는 일        | ⑥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 |
| ⑦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                |

제 1순위 (     )번

제 2순위 (     )번

3. 귀하는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생활비가 부족한 점          | ② 용돈이 모자란 점          |
| ③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일    | ④ 일자리를 구하는 일         |
| ⑤ 특별히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일 | ⑥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는 일    |
| ⑦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       | ⑧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일  |
| ⑨ 자녀들과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    | ⑩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

제 1순위 (     )번

제 2순위 (     )번

4. 귀하는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생활비와 용돈이 더 필요하다 | ② 사는 집을 고치는 일        |
| ③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일    | ④ 일자리를 구하는 일         |
| ⑤ 남는 시간을 잘 보내는 일  | ⑥ 아픈 몸을 치료하는 일       |
| ⑦ 바깥 출입을 잘하다 일    | ⑧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일      |
| ⑨ 말벗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 ⑩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

제 1순위 (     )번

제 2순위 (     )번

## 경제상태

5. 귀하의 현재 생활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은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높은 편이다
- ⑤ 매우 높다

6. 귀하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부담합니까?

- ① 본인 스스로
- ② 배우자
- ③ 함께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 ④ 따로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 ⑤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 ⑥ 정부 (각종 연금)
- ⑦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7. 귀하의 용돈은 주로 누가 부담합니까?

- ① 본인 스스로
- ② 배우자
- ③ 함께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 ④ 따로 사는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 ⑤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척/친지
- ⑥ 정부 (각종 연금)
- ⑦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8. 귀하께서는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호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
- ③ 그 외 \_\_\_\_\_ (말씀해주십시오)

9. 귀하는 현재 등록장애인(국가보훈처등록장애인 포함)이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현재 신청 중

10. 귀하(배우자)의 작년 한 해(2013년) 동안 수입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경우에 어르신 본인 혹은 배우자의 수입액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세후 소득입니다.

구분	본인의 연소득		배우자의 연 수입	
	수입유무 ① 있다 ② 없다	액수(만원)	수입유무 ① 있다 ② 없다	액수(만원)
1. 근로소득(세후)				
2. 사업소득(세후)				
3. 재산소득(세후)				
4. 사적 이전소득(세후)				
5.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기타 공적연 금(보훈연금,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연금			
6. 기타 수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타 소득				
총수입액 (본인, 배우자 각각)		만원		만원
총수입액 (본인+배우자)		만원		



11. 조사당일 현재 귀하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본인		배우자	
	수입유무 ① 있다 ② 없다	액수(만원)	수입유무 ① 있다 ② 없다	액수(만원)
1. 부동산 (땅, 집, 건물 등)				
2. 금융자산 (주식, 저축 등)				
3. 부채				

12. 귀하 혹은 배우자께서 주요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부채가 없으신 응답자는 1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생활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주택 마련		
의료비 마련		
교육비 마련		
자녀 결혼비		
기타 ( )		

### 경제활동

13.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현재 일하고 있다 → 문항 14번~14-6번으로
- ② 과거에 일을 하였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문항 15번~15-3번으로
- ③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 문항 16번으로

14. 현재 귀하께서 하시는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축·수산업      ② 자영업(숙박, 음식 등)      ③ 전문직(회계, 의료, 등)  
 ④ 경영·관리직      ⑤ 단순기술생산직      ⑥ 판매 및 서비스직  
 ⑦ 단순일용직      ⑧ 단순(사무·관리)보조직      ⑨ 실비 주는 자원봉사활동  
 ⑩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14-1. 현재 귀하께서 하시는 일(직업)의 평균 근로 시간을 얼마입니까?

주 \_\_\_\_\_ 시간

14-2. 현재 귀하께서 하시는 일(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자영업자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4-3. 현재 직업(일)에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몇 \_\_\_\_\_ 년 \_\_\_\_\_ 개월

14-4. 현재 귀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② 용돈이 필요해서      ③ 건강유지를 위해서  
 ④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⑤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⑥ 능력 발휘를 위해서  
 ⑦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4-5. 귀하께서 현재의 일자리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4-6. 귀하께서 현재의 일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 ① 계속 일할 생각이다  
 ② 다른 일로 바꾸고 싶다  
 ③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  
 ④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16. 귀하께서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경제적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 ②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 ③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④ 일하고 싶으나 집안일(가족수발 등) 때문에
- ⑤ 일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반대해서
- ⑥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서
- ⑦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⑧ 일자리(직장)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 ⑨ 내가 원하는 임금(보수)을 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⑩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지 몰라서
- ⑪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17.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까?

- ① 예 ☞ 문항 17-1번~17-9번으로
- ② 아니오 ☞ 문항 18번으로

17-1. 귀하께서 일을 하고 싶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 ② 용돈이 필요해서
- ③ 건강유지를 위해서
- ④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 ⑤ 능력(경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 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⑦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17-2. 귀하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
- ②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직종에 취업
- ③ 창업
- ④ 사회공헌형 일자리 (어린이 교육 지도 등)
- ⑤ 취미생활을 통해 부수입 얻는 일자리 (여가형 직종)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7-3. 귀하께서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 \_\_\_\_\_ 시간

17-4. 귀하께서 일하시면서 희망하는 월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월 \_\_\_\_\_ 만원

17-5. 귀하께서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주시오) 제 1순위( )번 제 2순위 ( )번

- ①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 ② 내가 희망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맞아야 한다
- ③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
- ④ 과거 내가 주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⑤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 ⑥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 ⑦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
- ⑧ 사회적 체면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 ⑨ 직장(일터) 내에 또래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⑩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 ⑪ 내가 하는 일이 지역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⑫ 기타 \_\_\_\_\_ (말씀해주시오)

17-6.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시오)

제 1순위 ( ) 번 제 2순위 ( )번

- ① 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관 의뢰
- ② 읍·면·동사무소, 시청·도청 담당 부서 의뢰
- ③ 시니어클럽 의뢰
- ④ 대한노인회(제주, 서귀포지회)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의뢰
- ⑤ 고용노동부 고령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의뢰
- ⑥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의뢰
- ⑦ 사설 직업안내소 의뢰
- ⑧ 개인적 인맥을 통해 부탁 (친구, 친·인척, 선·후배 등)
- ⑨ 신문 잡지, 컴퓨터 인터넷 등 검색
- ⑩ 취업(일자리) 박람회
- ⑪ 기타 \_\_\_\_\_ (말씀해주시오)

17-7. 귀하께서 취업(일)하고 싶은 구체적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 ① 아파트 경비관리직                      ② 주차장 관리원                      ③ 주유소 주유원
- ④ 일일 노무직 (공공근로)                  ⑤ 관광·문화해설사                  ⑥ 환경 관리원(청소 등)
- ⑦ 산림 관리원                                  ⑧ 보조 교사                                  ⑨ 식당보조원
- ⑩ 조리사    ⑪ 간병인    ⑫ 급식지도원
- ⑬ 농사일 하는 농부                          ⑭ 기타 \_\_\_\_\_ (적어주시오)

17-8. 귀하께서 앞으로 몇 년간 일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1~2년                      ② 3~4년                      ③ 5~6년                      ④ 7~8년  
 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⑥ 사업체(고용주)가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17-9. 다음은 귀하께서 취업을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 항목입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험이 없는 일이라도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원하지 않는 직종이라도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3. 임금수준이 낮아도 일을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4. 교통수단이 불편해도 다니겠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을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6. 원하지 않는 근무환경이라도 다니겠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께서 현재 취업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일자리가 절대 부족                      ② 취업 정보 부족(구인)                      ③ 적합한 직종 부족  
 ④ 건강문제                                      ⑤ 연령제한                                      ⑥ 출퇴근 교통문제  
 ⑦ 재취업 기술부족(능력)                      ⑧ 시간부족                                      ⑨ 낮은 임금  
 ⑩ 사회적 차별                                      ⑪ 자녀들의 만류                                      ⑫ 기타 \_\_\_\_\_

19.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대체로 모른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10.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 ②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다
- ③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 ④ 이혼한 상태이다
- ⑤ 평생 혼자 살고 있다

1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 ② 여성

1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b>ABSTRACT</b>
-----------------

## The Strategy and Alternative Options Toward Economic Life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Seniors in Jeju

Koh, Seung-Hahn & Lee, So-Chung

Keywords: aged society, elderly life, stabilization of elderly life, income security system of old people, senior work employment, social participation, employment policy for the elderly,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aged.

In Korea and Jeju as a whole, a remarkable social phenomenon is that we are going into the aged society, with the proportion of aged people in its population rising at the fastest pace in the world. It is likely that Jeju would be at the edge of aged society as soon as possible. Under this circumstance, we are concerned with the life security for the old people over 65-aged. In terms of social welfare in the senior society, it is so significant question on how to stabilize the elderly life against the poverty issue among senior persons in post-retirement life.

This study is to figure out some pivotal natures and outcomes of the aging society as a whole, in both Korea and Jeju society. Besides this issue, both income and employment policies for the aged people will be explicitly laid out. This research is also significantly concerned with enhancing a quality of life for the 65-aged seniors in Jeju. This is likely

to come out of the empirical survey outcomes. As a result, the research goal is to seek out some policy initiatives in dealing with both income security and re-employment after the retirement out of labor market in Jeju old people.

To meet this goal,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the 296 among senior persons over 65-aged dwelling in Jeju prov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May 26-31 in 2014 by using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analytic method was dependent on frequency analysis.

Some primary implications for social survey compromise the following things : 1) the post-retirement economic life for the elderly throughout Jeju province was not stabilized as much as we expect, 2) income security and employment opportunity were not enough to sustain their quality of life, 3) Jeju's old seniors had not a good healthy condition for everyday life, 4) to the elderly people of Jeju, the employment opportunity for better job was critically recognized to get more income revenue, 5) both job education and employment aid policies for over the 65-aged seniors were not advertised and expanded into them by Jeju provincial local government. These questions subjectively recognized by the elderly seniors to be interviewed will be considered a critical policy agenda within the elderly welfare context, in order to resolve them and seek out alternative policy initiatives for the elderly's quality life.

The future policy implications stemming from data analysis and diverse discussion would be associated with several significant ones as follows. In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first is to revamp a revenu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people across the country in a renovative way. The second is to rebuild the career-transit assistance infrastructure, for instance, National Career-transit Assistance Center, job career card system, learning-off programme, and so on. The third is tha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tremendous efforts to promote job creation, job retraining and re-education based on the job demand for the elderly people's employment extension, including securing the job-tenure continuity in terms of refixing a retirement-tenure extension law, and so on. The fourth is to help the 65-aged seniors with low income class excluded from formal assistant policy programs.

On the other hand, in Jeju provincial local government, first of all, we have to pay attention on b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authority in central govern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for the elderly people. The second is deeply to rethink Jeju-styled Basic Life Security System and induce it as possible, along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 policies. The third is to launch so-called job-transit aid system in Jeju, and would operate it well. Of course, it would make a much more effective function to economic life stabilization through law and institution reformation. The fourth is that interactiv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are needed between and within some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assigned to job creation and employment policy for old seniors over the 65-aged. The fifth is to build a emergency aid system for old seniors with the poor economic life, not assisted by the welfare policy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e sixth would be given to revitalize R&D project for studying the income revenue security system and policy of Jeju old people. The seventh is to regenerate and expand the elderly-friendly job more available to Jeju senior more than 65-year age, for example, a culture-travel guide.

In association with the economic life stabilization after retirement out of labor market over the 65-aged people, the community role and function for their economic life continuity are so important. And they should be explicitly paid to construct community based-elderly care

system, which means to intensify a much more voluntary engagement in the community unit of Jeju society as a whole, thus inducing love, respect and care for the old ones. Furthermore, an important thing is that the elderly people try to change their consciousness, attitude and behavior into more public arena related to the elderly welfare policies in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o intensify their independent life base.

## 연구진

책임연구원 :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 소 정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연구 2014-05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

발행인 || 공 영 민

발행일 || 2014년 6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 2동 44-1)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http://www.jdi.re.kr)

인쇄처 || 한미기획출판 전화: (064) 753-7891

---

ISBN : 978-89-6010-368-9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